

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 진도군 정기종합감사 －

2021. 7.



전라남도

JeollaNamdo

[감 사 관 실]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진도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진도군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8년 5월부터 '21년 2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인사관리·조직운영,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1. 3. 23.부터 3. 31.까지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II.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가+나+다+라)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건)												모범 사례 (다)	사전 컨설팅 (라)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B+C +D+E))	시 정							주의 (B)	개선 (C)	통보 (D)	기관 경고 (E)		
					계 (A =a+b)	재정상 처분(건/백만원)					재정상 처분의 시정 (b)						
						소계 (a)	회수	추징	감액	기타							
51	20 (37명)	3 (4명)	17 (33명)	27	14 (548)	9 (548)	4 (74)	3 (201)	1 (29)	1 (244)	5	7	2	3	1	2	2

2. 주요 지적사항

① 인사운영 부적정

- ☐ 위 군(행정과)은 '18. 9월부터 '21. 1월까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소속 직원들에 대해 정기 인사를 추진

1. 직렬불부합 인사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규정
- 또한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에 5급 이상 직위에 대한 직급과 6급 팀장에 대한 직급이 규정
 - 그런데 위 군(행정과)은 '18. 9월부터 '21. 1월까지 5급 이상 직위 정기 인사에서 적게는 2개, 많게는 7개 직위를 직렬에 맞지 않게 보직(직렬불부합)을 부여
 - '21. 3월 감사일 현재 기준으로는 5급 이상 38개 직위 중 5개 직위, 6급 팀장 149개 직위 중 16개 직위가 직렬에 맞지 않게 보직을 부여
- 그로 인하여 보직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성이 저해되어 조직 및 조직원의 능률 저하가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

2. 5급 과장급 공무원에게 6급 팀장급 업무를 병행 부여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행정과)은 '21. 1. 1. '○○○'을 5급 승진대상으로 의결하여 ○○단장(5급) 직무대리로 임용하면서, 6급 직위인 ○○ 직위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 2개의 직위를 부여
 - 그로 인하여 ○○단의 경우 불합리한 인사행정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 및 능률성이 저해

3. 인사위원회 형식적 운영

-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38조, 제42조에 인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심사를 하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며, 누구든지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행정과)은 '18. 5월부터 '21. 1월까지 소속 직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하면서 직렬별·직급별로 승진인사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협의한 후,
 - 인력관리 총괄부서장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추천자를 추천하고 다른 위원들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추천자가 승진자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불합리하게 인사위원회를 운영

☞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한 직위별 직급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며, 승진심사 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을 보장하도록 “기관경고”

② 숲가꾸기사업 계약방법 및 현장 관리감독 부적정

- 위 군(환경산림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 제고를 위해 국비 4,915백만원을 교부받아 “숲가꾸기사업” 추진
- 「산림자원법」 제23조 등에 국가·지자체는 50ha 이상 속아베기를 수반한 숲가꾸기사업만 산림조합에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산림과)은 '18년부터 '19년까지 50ha 미만 속아베기를 수반한 숲가꾸기사업 3건 3억 3,600만원을 ○○○○ 과 대행계약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다수업체의 참가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 초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등에 동일 구조물·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산림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시기·공정이 같은 숲가꾸기 사업 43건(6억 7,400만원)을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6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경쟁입찰 대비 약 3,200만원의 예산낭비 초래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0조에 감독자는 사업 착수 시 현장대리인 등의 정보를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타 지역 사업장과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산림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131건 사업 중 14건만 착수 시 확인하고 117건은 착수 이후 확인하는 등 관리 소홀
 - 그로 인하여 작업원이 타 사업장으로 이탈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작업원에 대한 인건비 이중지출은 없음)

☞ 예산낭비와 관리감독에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③ 축산업 허가제 등 이행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 위 군(진도개축산과)은 축산업 허가·등록과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업무 추진

- 「축산법」 제22조 등에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허가·등록 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면 지자체장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
 - * (무허가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등록 시) 과태료 1회 100만원
- 그런데 위 군(진도개축산과)은 8개 농가가 축산업 허가·등록 없이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도 고발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미이행
- 또한 「축산법」 제33조의2 제1항 등에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진도개축산과)은 '19년에 축산업 종사자 6명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과태료 120만원을 미부과
- 그로 인하여 가축질병에 취약한 방역·시설 운영으로 가축질병 전파요인과 보수교육을 통한 가축질병 대응능력 강화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

☞ 축산업 허가·등록 위반자에 대해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축산업 허가·등록 위반자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4 정보공개청구 업무 부당 처리

- 위 군(민원봉사과 등)은 '18. 5월부터 '21. 3월까지 정보공개청구 4,799건을 처리
- 「정보공개법」 제11조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 등)은 '18. 5월부터 '20. 12월까지 98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짧게는 18일부터 길게는 200일까지 지연 처리(현재는 처리 완료)
 - 그 결과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였으며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훼손

☞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으나 앞으로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통보(시정완료)”

5 자동차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건설교통과)은 '18년부터 '21. 3월까지 화물운송 종사자, 화물·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추진

1. 유가보조금 의심자 확인 및 행정처분 미이행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등에 화물차주와 여객운송 종사자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면 유가보조금을 환수, 지급정지(1차 위반 6개월, 2차 위반 1년) 및 형사고발 등을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교통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화물차주 30건(92만원), 여객운송(택시)종사자 115건(500만원)에 대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사실확인 및 행정처분(환수 등) 미조치
 - 그로 인하여 유가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유가보조금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 실추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관할관청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반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교통과)은 전남도로부터 '20. 11. 17. 통보된 종사자격 취소대상자 12명 중 8명에 대해서 '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도 행정처분 미이행으로 화물운송자격 없는 자의 불법운행 및 교통사고 유발 우려 발생

3. 자동차 과태료 관련 자료 미조회 및 과태료 미부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등에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의무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고, 지자체장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의무보험 가입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교통과)은 '20년 1월부터 6월까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의무보험 등 미가입 내역을 수신받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 대장에도 미등록하여 4,513만원의 과태료 부과 누락
- 또한 '18년부터 '20년 기간 동안 의무보험 등에 미가입한 차량 251대의 자동차 보유자에게 약 9,158만원의 과태료 미부과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등에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교통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타 지자체로부터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자로 통보받은 396건 중 66건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약 1,482만원의 과태료 미부과
- 그 결과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가 목적인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함

-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을 미수신하여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한 당시 담당자와 관련 업무(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 행정 처분, 과태료) 지도·관리 하지 못한 담당팀장에게 각각 “경징계요구”
- ☞ 유가보조금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담당팀장 모두 문책하여야 하나, 감사 대상기간 동안 담당자가 4차례나(업무기간 평균 6개월) 바뀌어 인수인계 및 연찬이 되지 않아 원활한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담당자 4명은 “훈계요구”
-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내역 사실관계 조사와 부정수급 시 유가보조금 환수 하고 누락된 과태료 1억 5,154만원을 부과토록 “시정요구”

6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세무회계과)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회계관리 규칙」 제75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개설·사용함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회계관리 규칙」 제77조 제4항에 세입세출 외현금으로 보관하는 보관금의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반환기간 5년이 경과한 보관금 등 27건, 약 1억 1,041만원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에게 반환청구 가능 사실을 미통보하였고,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에 방치
 - 또한 일시보관금 34건, 약 1억 1,670만원을 즉시 세입처리 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

☞ '18년부터 '20년까지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 미조치 및 반환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2명에게 “훈계요구”

☞ 해당부서에 5년이 경과하여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약 1억 1,041만원과 일시보관금 약 1억 1,670만원에 대해 세입처리하도록 “시정요구”

7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세무회계과)은 '18년부터 '20년 기간에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
- 「지방세법」 제7조 등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세를 미신고·미납부하면 지자체장은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18년부터 '20년 기간에 신고·납부 누락 및 감면조건 위반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취득세 162건, 4,174만원을 부과 누락

☞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아 부과누락 되거나, 감면요건을 위반하여 추징대상이 된 취득세 4,1740만원을 부과(추징)토록 “시정요구”

⑧ 사회보장급여 업무 추진 부적정

- 위 군(주민복지과 등 2개소)은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및 사후관리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등에 연 1회 이상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실제소득에 합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18. 5월부터 '21. 3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실제소득에 반영하지 않아 10명에게 1,869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지급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에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권을 상실하면 다음 달부터 급여를 미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생계급여를 6명에게 582만원 과소지급 및 11명에게 1,914만원을 과다지급하고, 장제급여를 7명에게 545만원 미지급하였으며, 장애인연금을 10명에게 614만원 과소지급
 - 그리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등에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 3개월 이상 입원 중이면 주거급여는 미지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4명의 주거급여 85만원(9개월)을 착오 지급
 -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 초래

☞ 과소 지급된 생계급여, 장제급여, 장애인연금 1,741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1,999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9 수산물○○○○시설사업 등 추진 부적정

- 위 군(수산지원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물○○○○ 시설사업(9건, 83억원) 및 ○○용수 정수시설 사업(5건, 17억원)을 지원하고 사후관리
 - 「지방계약법」 제8조 등에 보조사업자는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를 계약 체결하려는 경우 군수에게 계약 대행 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지원과)은 '18년 수산물 ○○○○ 시설사업(1건, 4억 4,200만원) 및 ○○용수 정수시설사업(1건, 3억 9,200만원)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수의 계약하여 약 1억 2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데도 관리·감독 소홀
 - 또한 보조사업자가 「수산물 ○○○○시설사업 시행지침」상 지원대상이 아닌 지게차 1대를 3천4백만원에 구입하는 등 목적 외 사용하였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동종자격을 보유한 업체들의 입찰 참여기회 상실 및 약 1억 3,600만원의 예산낭비 초래

- ☞ 보조사업을 계약대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게 한 (前)담당부서 팀장에게 “경징계요구”
- ☞ 보조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지게차 구입을 부당 정산처리한 (前)담당부서 팀장에게 “훈계요구”

10 농업·기술지도분야 민간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농업지원과 등 2개소)은 '18년부터 '20년까지 지역 농산물 생산·가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52개 사업에 144억원을 지원하여 시설·장비 구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 등에 보조사업자는 2억원 초과 공사는 위탁대행(지자체)하거나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지원과 등 2개소)은 '18년부터 '20년까지 보조사업자가 13개 38억원 사업을 수의계약(9건, 14억원), 나라장터 미이용(3건, 8억원), 나라장터를 이용했지만 적격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약절차를 위반(1건, 16억원) 하는데도 관리 소홀
- 같은 규정 제72조에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합동점검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지원과 등 2개소)은 '18년부터 '20년까지 보조금이 지원된 38개 사업 중 14개 사업은 출장결과보고서도 없이 수기대장에 '이상없음'으로 관리 및 11개 사업은 출장결과보고서는 있으나 목적대로 이용 여부가 미작성되어 실질 운영여부 확인이 불가능
 - '21. 3. 24. 감사 기간 중에 2018~2019년 ○○ ○○○ 향상 ○○전략 주산단지 사업 현장을 점검한 결과 13종의 장비는 사용실적이 없었고, 설치가 미완료된 기계들이 있는데도 '이상없음'으로 관리
 - 또한 '18년 지원한 콤팩트인이 '19. ○월 전복사고로 폐기하고 피해 보상금으로 보험료를 받았는데도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미조치
- 「보조금법」 제16조 등에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등을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은 보조사업자가 '18년부터 '20년까지 다목적 콤팩트인 구입을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보다 321~1,878만원 높게 구매하여 예산 낭비(5대, 약 3,798만원) 하는데도 관리·감독 소홀

☞ 보조사업자의 계약 및 중요재산 사후관리 등 민간보조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3명에게 “훈계요구”

11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관리 부적정

- 위 군(안전생활지원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총 105개(누계)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추진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등에 시설물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생활지원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관리대상 시설물 105개소 중 공공시설물 38건에 대하여 유지관리계획을 미수립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6조에 민간관리 시설물 주체가 민간관리시설물 등록,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입력·보고하고, 취합 기관 및 제출기관이 승인·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생활지원과)은 지자체장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점검 하여야 하는 3종 민간시설물 27건에 대하여 시설등록 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등을 소홀히 하고, 시설물 등록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관련부서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유지관리계획수립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시정요구”

12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부적정

- 위 군(문화예술체육과 등 5개 부서)은 '18년부터 '21. 3월까지 47개 사업장에 품질관리계획 승인 및 품질관리비용 계상 등의 업무를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는 품질관리비를 계상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건설교통과)은 1개 사업장에 품질관리비용을 2,925만원 과다 반영하였고, 문화예술체육과 등 5개 부서는 35개 사업장의 품질관리계획을 미승인

☞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과장에게 “훈계요구”

☞ 행정절차 이행 및 과다 반영된 사업비 2,925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13 수산물○○○○사업(공장) 보조금 교부 결정 등 사업추진 부적정

- 위 군(경제마케팅과)은 '19. 3.월부터 '20년 6월까지 ○○○○영어조합 법인에게 수산물○○○○사업(공장) 보조금을 지원
 - 「'18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수산물○○○○사업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공장설립승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마케팅과)은 '19. 3. 12. 보조사업자가 공장설립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14억 4,000만원을 부당 교부
 - 또한 '20. 6. 15. 공장설립승인 없이 공장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 등록을 못하고 있는데도 보조금 14억 4,000만원을 정산 처리
-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10. 4. 위 법인에게 공장 건축물 건축을 허가하고 '20. 5. 11. 건축물 사용승인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9조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보조사업자의 공장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 공장설립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그 결과 공장 건축물을 준공하였음에도 공장등록을 하지 못함

☞ 보조사업 시행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공장설립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무 담당자에게 “1명 경징계요구, 2명 훈계요구”

14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업무 등 설계 용역 추진 부적정

- 위 군(행정과, 지역개발과)은 '20. 10. 27. 진도군 ○○○ 신축, '20. 11. 25. ○○○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각각 추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에 설계용역 발주 전 공공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 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 등을 용역비 규모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행정과)은 진도군 ○○○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9,631만원에 발주하면서 공공건축 기획 및 공공건축심의를 미 실시하고 용역계약을 발주의뢰
 - 또한 지역개발과는 ○○○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1억 3,288만원에 발주하면서 공공건축 기획, 사업계획 사전 검토, 공공건축심의를 미 실시하고 설계공모가 아닌 일반입찰로 계약 의뢰
 - 아울러 세무회계과는 실시설계 용역 발주의뢰 건에 대해 관련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

☞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 용역 발주를 의뢰한 업무 담당자 2명에게 “**훈계요구**”

☞ 앞으로 법령에서 정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3. 모범 사례

1 | **팽생이모자반 해상 수거·처리로 해양문제 선제적 대응**

대규모 팽생이모자반을 해상에서 수거·환경친화적 방법 처리로 팽생이모자반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저감하고 예산절감 도모

□ 추진배경

- 해상의 대규모 팽생이모자반을 육상으로 운반·적치함으로써 악취 및 해충 등 민원 발생 및 폐기물 처리비 추가 소요
- '19년부터 팽생이모자반을 해상처리시설로 수거하여 고온에서 자연 소멸하게 하는 환경친화적 처리방법 도입

※ 해상 수거 → 해상 처리시설로 운반 → 수온 20℃ 이상에서 자연소멸

□ 사업개요

- (사업량) 팽생이모자반 해상 수거·처리시설 8개소 설치
- (사업비) 80백만원(군비)
- (주요내용) 팽생이모자반 해상 수거·처리시설, 수거운반선박 임차 지원

□ 지금까지 추진사항

- 팽생이모자반 해상 수거·처리시설 8개소 설치(440톤 처리)
 - ('19년) 3개소, 120톤 처리(조도면 울목, 나배, 동구어촌계)
 - ('20년) 5개소, 320톤 처리(조도면 소마, 나배, 가사, 궁항, 돌목어촌계)
- 팽생이모자반 운반선박 등 장비 지원(7개면, 20백만원)
 -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의신면,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팽생이모자반 피해]



[해상 수거·처리시설]



[팽생이모자반 수거]



□ 기대효과

- 팽생이모자반을 해상 수거하여 육상에 적치 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발생 등 피해를 해소하고 육상·적치 운반 처리비 절감(연 160백만원)
 - (예산 절감액 160백만원) 50만원(톤당 육상적치·운반비)×40톤×8개소
- 팽생이모자반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신안군 등에 선진사례 전파

2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전승 지원

대한민국 유일 민속문화예술특구로서 진도군의 무형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무형유산의 보존·전승 및 전승자 역량 강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0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진도
- 사업대상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강강술래 외
- 사업비 : 20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추진사항

- '19. 9. 17. :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진도 공모 선정(200백만원)
 - 선정도시 : 진도, 대전, 양주, 평창, 부여 - **전남도 내 최초 선정**
- '20. 4.~10. : 진도군 무형유산 10종목 기록화 영상 촬영
- '20. 11. 17. :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기획공연 『진도풍류』
 - 주요 출연자 : 이희춘, 김병천, 유아영, 양혜인, 강강술래보존회, 씻김굿보존회 등
- '20. 11. 30. : 진도의 무형문화유산 도서 발간

□ 주요 사업성과

- 무형유산 체계적 전승을 위한 기록 관리
 - 기록 영상 제작 : 무형유산 10종(국가지정 4종, 도지정 6종)
 - 도서 “진도의 무형문화유산”발간 : 무형유산 24종 정리(지정 10종, 비지정 14종)
- 무형유산 대중화를 통한 저변 확대
 - 문화유산 방문 기획공연 『Korea On Stage』 : KBS 윤림산방 방영/('20. 10. 1.)
 - 수요상설 공연 『진수성찬』 신설 : 2020년~ / 무형문화재전수관 / 14회 1,132명 관람
 - 한국 관광의 별('19년) 『토요민속여행』 : '97년~ / 매주 토요일 2시 / 884회 41만명
- 무형유산 전승자 역량 강화
 - 진도군립예술단 운영 : 단원 30명 / 매주 토요일 공연 / 무형유산 교육·전승
 - 민속전수관 활성화 : 전수관 10개소 / 무형유산 전수교육(10종) / 연 5,000명 이용

□ 기대효과

- 다양한 사업을 통한 무형유산 민속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 확립
- 차별화된 전통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공연을 통한 관광객 유치 기여

참 고 무형유산 관련 사업성과



강강술래 기록화 영상



남도들노래 기록화 영상



진도씻김굿 기록화 영상



진도다시래기 기록화 영상



진도북놀이(박관용류) 기록화 영상



진도만가 기록화 영상



진수성찬



진수성찬

4. 처분요구서

목 차

① 공무원 피의사건에 대한 징계요구 부적정(훈계)	20
②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22
③ 인사운영 부적정(기관경고)	26
④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30
⑤ 숲가꾸기사업 계약 및 현장 관리·감독 부적정(훈계)	33
⑥ 축산업 허가제 등 이행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훈계, 시정) ...	37
⑦ 정보공개청구 업무 처리 부적정[통보(시정완료)]	41
⑧ 관급자재 등 물품구입 절차 부적정(주의)	43
⑨ ○○개발 및 ○○○○○ 공사 추진 부적정(훈계, 개선, 주의)	47
⑩ 자동차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업무 처리 부적정(징계, 훈계, 시정)	56
⑪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처분 부적정(훈계, 시정)	66
⑫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69
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72
⑭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지출 부당 처리(훈계, 시정)	76
⑮ 진도○○○ 위험구역 ○○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훈계)	79

①⑥	사단법인 ○○○○○○○○협회 운영비 지원 부적정(개선, 주의)	83
①⑦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86
①⑧	식품·공중위생 업무 추진 부적정(시정)	93
①⑨	수산물○○○○시설사업 등 추진 부적정(징계, 훈계)	96
②⑩	진도군○○회 및 (사)○○○○회진도군지회 보조금 관리·감독 부적정(시정, 주의)101	
②⑪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등 부적정(시정)	106
②②	농업·기술지도 분야 민간보조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111
②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관리 부적정(훈계, 시정) ..	119
②④	○○ 일반산업단지 인허가·지정취소 등 사업관리 부적정(훈계, 통보) ...	123
②⑤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128
②⑥	수산물○○○○사업(공장) 보조금 집행 등 사업 추진 부적정(징계, 훈계, 주의) ..	132
②⑦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업무 등 설계 용역 추진 부적정(훈계, 주의)	139
②⑧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142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공무원 피의사건에 대한 징계요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기획예산과)

훈계대상자 진도군 ○○과 지방행정○급 ○○○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20○○. ○.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약식 처분이 통보된 ○○과 지방공업○급 ○○○에 대하여 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최종적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다.

지방행정○급 ○○○은 2019. 7. 1.부터 2020. 12. 31.까지 ○○○○과에서 징계요구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9. 6. 25. 개정)」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3]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징계기준이 ‘강등~정직’(중징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소속 직원의 무면허 운전 관련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단순 무면허 운전인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무면허 운전인 지 여부를 확인 후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기획예산과)은 2000. 0. 00.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약식 처분이 통보된 00과 지방공업0급 000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면서, ‘000’의 행위는 과거 2000. 12. 28.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된 사실이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되어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면허 운전으로 해당하므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에 따라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강등~정직) 요구를 하여야 했는데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만 적용해 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그로 인하여 ‘000’가 2000. 0. 00. 진도군인사위원회에서 공직에 의한 감경을 적용해 “불문경고”로 의결되어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할 공무원이 불문경고 처분에 그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진도군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에 따른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기준 보다 경하게 처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부서로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을 몰랐다는 점은 오히려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라 판단되므로 진도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피의사건에 대해 징계를 부적정하게 요구한 지방행정0급 000에 대해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라남도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경제마케팅과)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를 위해 2019. 3월부터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상품권은 지류형으로 1만원권·5만원권 등으로 발행 중이고, 상품권 발행액은 2021. 3월말 기준으로 아래 [표 1] “2019 ~ 2021 진도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명세(정책발행분 포함)”와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30억원이며, 할인율은 [표 2] “2019 ~ 2021 진도사랑상품권 할인율 명세”와 같이 판매시점에 따라 0%에서 10%로 지정하여 발행·판매하고 있다.

[표 1] 2019 ~ 2021 진도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명세(정책발행분 포함)

(단위 : 백만원)

연도	발행액			판매액			미판매액		
	계	지류	전자	계	지류	전자	계	지류	전자
계	43,000	43,000	0	38,856	38,856	0	4,144	4,144	0
2019	3,000	3,000	0	2,330	2,330	0	670	670	0
2020	30,000	30,000	0	23,738	23,738	0	6,262	6,262	0
2021	10,000	10,000	0	12,788	12,788	0	-2,788	-2,788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2019 ~ 2021 진도사랑상품권 할인율 명세

(단위 : 백만원)

연도	할인율	판매액	연도	할인율	판매액
계		38,856			
2019. 6월	0%	137	2020. 1월 ~ 12월	5~10%	23,738
2019. 7월 ~ 12월	5~10%	2,193	2021. 1월 ~ 3월	5~10%	12,788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정책발행분은 할인율 없음)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안되고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개별가맹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소위 ‘상품권 깡’)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조례 제10조에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조례 제10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된 날부터 2년간 상품권 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상품권 깡’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등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경제마케팅과)은 2021. 3월 전라남도 종합감사 기간에 상품권 부정가맹점 및 부정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도아리랑상품권 관리 시스템¹⁾’을 이용해 실시한 결과, [별표 1] “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명세(2019. 6월 ~ 2021. 3월)”와 같이 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²⁾ 점검 대상이 61개 업체(1,336,300천원)가 추출되었으나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령하거나 현장에서 장부·서류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상품권 사용자 중 [별표 2] “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사용자 명세(2019. 6월 ~ 2021. 3월)”와 같이 부정유통 의심 사용자³⁾ 185명의 789,600천원에 대한 점검 등의 조치 또한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진도아리랑상품권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과 사용자의 ‘상품권 깡’ 등에 대한 처벌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상품권 관리 시스템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방법을 알지 못해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과 사용자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1) 구매업체 : ○○○, 계약 : 201○. ○월

2) 1인당 구매한도로 상품권을 구입해 1개의 개별가맹점(미용업, 식당 등)에서 모두 사용한 경우 진도아리랑상품권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맹점별로 추출(환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업체)

3) 1인당 구매한도로 상품권을 구입해 1개의 개별가맹점(미용업, 식당 등)에서 모두 사용한 경우 진도아리랑상품권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로 추출(5회 이상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①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61개 업체)과 부정유통 의심 사용자(185명)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시정)

② 조사결과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한 부정유통 업체 또는 부정유통 의심 사용자에게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기관경고

제 목 인사운영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행정과)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2018. 9. 1.부터 2021. 1. 1.까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추진하였다.

2. 직렬불부합 인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 1]과 [별표 2]에 본청과 직속기관의 부서장과 읍·면장의 직급이 규정되어 있고,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별표 1]에서부터 [별표 6]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출장소 포함)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직 임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행정과)은 2018. 9. 1.부터 2021. 1. 1. 5급 이상 직위에 대한 정기인사에서 아래 [표 1] “진도군 5급 이상 직위 직렬불부합 명세”와 같이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7개 직위에 대해 직렬에 맞지 않게 보직을 부여하였다.

[표 1] 진도군 5급 이상 직위 직렬불부합 명세

정기인사 시기	5급 이상 직위 수	직렬불부합 직위	
		개수	직위명
2018. 9. 1.	34개	2개	○○소장, ○○과장
2019. 1. 1.	34개	2개	○○소장, ○○과장
2019. 7. 1.	34개	5개	○○소장, ○○과장 ○○위원, ○○면장
2020. 1. 1.	35개	7개	○○소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소장, ○○면장
2020. 7. 1.	35개	6개	○○소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소장
2021. 1. 1.	38개	5개	○○소장, ○○과장 ○○과장, ○○소장 ○○과장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1. 3. 31. 감사일 현재 기준으로 [표 2] “2021. 3월 현재 진도군 5급 이상 직위 직렬불부합 세부명세”와 같이 5급 이상 38개 직위 중 5개 직위에 대해 직렬에 맞지 않게 보직을 부여 중이고, [별표] “2021. 3월 현재 진도군 6급 팀장 직위 직렬불부합 명세”와 같이 6급 팀장 149개 직위 중 16개 직위도 직렬에 맞지 않게 보직을 부여하고 있다.

[표 2] 진도군 5급 이상 직위 직렬불부합 세부명세

직렬불부합 5급 이상 직위('21. 3월)	정원상 직급	현 임용직급	불부합 기간
○○소장	행정5급, 공업5급, 시설5급	환경5급	2018. 9. 1. ~ 현재
○○과장	행정5급, 시설5급	해양수산5급	2020. 1. 1. ~ 현재
○○과장	행정5급, 농업5급, 시설5급	해양수산5급	2020. 1. 1. ~ 현재
○○소장	기술4급	농업5급	2021. 1. 1. ~ 현재
○○과장	농촌지도관	농업6급(직무대리)	2021. 1. 1. ~ 현재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보직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성이 저해되어 조직 및 조직원의 능력을 저하가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5급 과장급 공무원에게 6급 팀장 업무 병행 부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소속 직원에 대해 그 직급에 상응하는 하나의 직위에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행정과)은 2021. 1. 1. 지방행정○급 ‘○○○’을 5급 승진대상으로 의결하여 ○○단장(5급) 직무대리로 임용하면서 6급 직위인 ○○실장 직위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등 2개의 직위를 부여하였다.

그로 인하여 ○○단의 경우 불합리한 인사행정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능률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인사위원회 형식적 운영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과 승진임용의 사전 심사를 하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며, 누구든지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인사위원회에서 각 시기별·직급별 승진 사전심의를 할 때에는 승진대상자들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엄정한 심의를 통해 승진예정자들을 선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행정과)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시된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하면서 직렬별·직급별로 승진인사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협의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인력관리 총괄부서장인 ○○과장이 승진후보자에 대한 근무실적을 일괄설명 후 승진의결자를 추천하고 다른 위원들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추천자가 원안대로 그대로 승진자로 의결되는 방식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였다.

그로 인하여 추천 받지 못한 공무원은 정당한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의 기회도 없이 탈락되는 등의 불합리하게 인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한 직위별 직급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며, 승진심사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행정과)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2018. 6월부터 2021. 1월까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평정자가 부여한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群) 내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고,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기초하여 전체 근무성적평정서열을 결정하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평정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평정자가 부여한 동일한 평정대상공무원군(群)내 서열을 확인자가 조정할 수 없도록 하면서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평정단위별 순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체 평정서열을 결정하도록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행정과)은 2018년 상반기(2018. 7월)와 2019년 하반기(2020. 1

월)에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평정자가 정한 순위와 다르게 [표 1] “평정단위내 근무성적평정 부당 변경 명세”와 같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부당하게 작성(각각 2명)되었음에도 오류를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표 1] 평정단위내 근무성적평정 부당 변경 명세

연번	평정 시기	평정 단위	대상자			근무성적평정				비고
			직렬	부서	이름	평정자	평정 단위별	심의의결서 기준		
						순위	순위	순위	점수	
1	2018년 상반기	전체	해양수산○급	○○과	○○○	5	10	10	50	
2			해양수산○급	○○과	○○○	6	9	9	52	
3	2019년 하반기	○○○	행정○급	○○과	○○○	2	13	15	56	
4			행정○급	○○과	○○○	3	11	12	59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8년 하반기(2019. 1월)에는 [표 2] “근무성적평정서열 부당 변경 명세”와 같이 6명에 대해 평정단위별 제출한 순서와 다르게 전체 근무성적평정서열을 부당하게 변경하였다.

[표 2] 근무성적평정서열 부당 변경 명세

연번	평정 시기	평정 단위	대상자			근무성적평정			비고
			직렬	부서	이름	평정 단위별	심의의결서 기준		
						순위	순위	점수	
1	2018년 하반기	○○○	행정○급	○○과	○○○	11	23	52	
2			행정○급	○○과	○○○	13	17	55	
3		○○ ○○국	농업○급	○○과	○○○	2	3	58	
4			농업○급	○○과	○○○	3	2	61	
5		○○ ○○국	시설○급	○○과	○○○	2	3	61	
6			시설○급	○○과	○○○	3	2	58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근무성적평정상의 선순위와 후순위가 바뀌는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앞으로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위반하여 평정자가 정한 순위와 다르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제출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숲가꾸기사업 계약 및 현장 관리·감독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환경산림과)

훈계대상자 진도군 ○○○○과 지방녹지○급 ○○○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보조금(4,915백만원)을 교부받아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녹지○급 ○○○은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과에서 숲가꾸기사업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또는 숲아베기를 수반하

는 숲가꾸기사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숲가꾸기사업의 계약을 의뢰하기 이전에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숲아베기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부서(세무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환경산림과)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1] “2018 ~ 2019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숲아베기 사업량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3개 사업(402,053천원)을 진도군○○○○과 대행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세무회계과)에 의뢰하였다.

[표 1] 2018 ~ 2019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 명세

연도	사업명	사업량 (만㎡)	사업자	사업기간	계약의뢰 (천원)	계약금액 (천원)
계	3개 사업	-	-	-	402,053	335,901
2018	2018년 상반기 숲 가꾸기 사업 (○○지구)	35	진도군 ○○○○	2018.3.19.~5.17	136,770	109,149
2018	2018년 상반기 숲 가꾸기 사업 (○○지구)	32	〃	2018.6.12.~8.10	119,330	95,531
2019	2019년 경관개선 숲 가꾸기 사업	23.5	〃	2019.3.26.~4.29	145,953	131,221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숲가꾸기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다수 업체가 참여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숲가꾸기사업 분할발주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 및 시기가 확정된 동일

공정의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분할계약이 아닌 일괄계약이 될 수 있도록 계약 부서(세무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환경산림과)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동일 시기 및 공정이 같은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2] “2018 ~ 2020 숲가꾸기사업 분할계약 명세”와 같이 총 43개 사업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부서(세무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였고, 계약부서(세무회계과)는 43개의 숲가꾸기사업을 6개 업체와 1인 건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2018 ~ 2020 숲가꾸기사업 분할계약 명세

연도	사업 (개)	계약		추진기간	계약내역(천원)			
		방법	업체(개)		예정가격 (A)	계약금액 (B, 90%)	경쟁입찰 시(C) (87.875%)	차액 (B-C)
계	43개	-	6개	-	732,151	674,023	642,426	31,597
2018	20	수의 계약	6	2018. 4. ~ 12.	337,333	303,626	295,993	7,633
2019	17	"	6	2019. 5. ~ 12.	294,547	280,156	258,450	21,706
2020	6	"	5	2020. 7. ~ 8.	100,271	90,241	87,983	2,258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경쟁입찰 대비 31,597천원의 예산낭비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의 참여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 관리감독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 제1340호)」 제20조에 따르면 숲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은 작업인원의 50% 이상이 산림경영 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하고, 감독자는 사업 착수 및 작업원 교체 시 현장 대리인, 작업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타 지역 사업장과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숲가꾸기 작

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제출한 작업원 운영계획서에 숙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의 경우 기술인력을 50% 이상 구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이중·허위등록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환경산림과)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3] “2018 ~ 2020 작업원 전산시스템 지연입력 명세”와 같이 사업 착수 시 작업원 명부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허위·중복 투입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는데도 총 131건의 사업 중 14건만 착수 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117건은 착수 이후 및 사업 완료 후 입력하는 등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2018 ~ 2020 작업원 전산시스템 지연입력 명세

연도별	사 업 량 (건)	전산시스템 입력(건)			최대 지연일수 (일)
		착공 시	착공 이후	사업완료 후	
계	131	14	91	26	-
2018	45	0	29	16	48
2019	43	9	31	3	44
2020	43	5	31	7	150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인 작업원이 타 사업장(2019년 ○○군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 9건)에 이중 등록되어 전문가에 의해 시공되어야 할 숙아베기 등의 공정 완성도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숲가꾸기사업 계약 및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녹지○급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축산업 허가제 등 이행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진도개축산과)

훈 계 대 상 자 진도군 ○○○○○과 지방농업○급 ○○○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정기점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농업○급 ○○○은 2020. 7. 1.부터 20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 ○○○ ○○○과에서 가축사육업 관련 행정처분 및 정기점검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축산업 무허가 및 미등록 농가 행정처분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가축의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축사의 위치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허가(중요사항 변경 포함)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는 과태료(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400만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축산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진도개축산과)은 [표 1]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 명세”와 같이 2021. 3. 31. 감사일 현재 시장·군수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형사고발 등)을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1]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 명세

연번	대표자	사육두수	주 소	업 종	허가여부	행정처분유무	행정처분내용
계	8명	-	-	-			
1	○○○	8	진도군 ○○면 ○○리 000	한육우	무허가	미처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	○○○	9	진도군 ○○면 ○○리 000	"	"	"	
3	○○○	27	진도군 ○○읍 ○○리 000	"	"	"	
4	○○○	9	진도군 ○○읍 ○○리 000	"	"	"	
5	○○○	8	진도군 ○○면 ○○리 000	"	"	"	
6	○○○	3	진도군 ○○면 ○○리 000	"	미등록	"	과태료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400만원)
7	○○○	4	진도군 ○○읍 ○○리 000	"	"	"	
8	○○○	1	진도군 ○○면 ○○리 000	"	"	"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축산업 허가 등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 불법 축산 경영형태가 지속되거나 취약한 방역·시설 운영으로 가축질병의 전파요인이 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3. 축산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축산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업의 등록 등을

하려는 자는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 33조의2 제3항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4]에 따라 과태료(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운전자 등에 대해 등록 당시의 교육 이수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미이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진도개축산과)은 그동안 축산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현황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진도군 종합감사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도군 보수교육 현황을 조회한 결과 [표 2] “보수교육 미이수자 명세”와 같이 미이수자가 발생되었는데도 교육 이수 독촉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보수교육 미이수자 명세

연 도	성 명	교육명	주 소	업 종	과태료(원)
계	6명	-	-	-	1,200,000
2019	○○○	차량종사자	진도군 ○○면 ○○리 000	한우	200,000
	○○○	차량종사자	진도군 ○○면 ○○리 000	한우	200,000
	○○○	차량종사자	진도군 ○○면 ○○리 000	한우	200,000
	○○○	차량종사자	진도군 ○○읍 남동○길 00	오리	200,000
	○○○	차량종사자	진도군 ○○읍 동외○길 00	오리	200,000
	○○○	차량종사자	진도군 ○○면 ○○리 000	한우	200,000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축산 관련 종사자들이 축산 관련 법령 및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

얼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축 전염성 질병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 ①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지방농업○○급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통보(시정완료)

제 목 정보공개청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민원봉사과)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주민들이 청구하는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799건을 처리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을 경우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접수일로부터 최대 20일 이내에 정보공개 결정이나 비공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민원봉사과 등)은 2018. 5. 1.부터 2020. 12. 11.까지 접수된 112건의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접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처리를 지연하였거나 공문을 통해 정보공개 통지하였으나 업무처리 미숙으로 시스템에 미 입력하는 등 [별표] “진도군 정보공개 청구 업무처리 지연 명세”와 같이 짧게는 18일부터 길게는 216일까지 지연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었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이미 처리를 완료하였으나 향후 동일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관급자재 등 물품구입 절차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세무회계과, 안전건설과, 기획예산과)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쿨루프 설치공사 관급자재(153백만원)와 보배섬 진도 소식지 제작(153백만원)을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관급자재 금속제울타리(220백만원)을 총 4회로 나누어 분할구매하였다.

2. 1인 견적 수의계약 업무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은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 ‘분할계약 금지’ 편에 따르면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예산의 지출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사업기간 및 계약시기가 같거나 비슷한 사업들은 통합발주 하여 금액에 따라 2인 견적 혹은 입찰에 의하여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고,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사업량을 분할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세무회계과, 안전건설과, 기획예산과)은 [표 1] “진도군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동일·유사한 사업임에도 시기 및 사업량을 달리하여 계약상대자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진도군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

(단위 : 천원, %)

연번	사업명	예정 금액	계약 금액	낙찰 율	계약일	납품일	계약상대자
합계	21건	305,749	275,170	90			
1	보배섬 진도 소식지(제00호) 제작	17,000	15,300	90	2018.09.13.	2018.09.19.	○○○
2	보배섬 진도 소식지(제00호) 제작	17,000	15,300	90	2018.12.10.	2018.12.24.	○○○
3	보배섬 진도 소식지(제00호) 제작	17,000	15,300	90	2019.06.20.	2019.06.26.	○○○
4	보배섬 진도 소식지(제00호) 제작	17,000	15,300	90	2019.09.17.	2019.09.20.	○○○
5	보배섬 진도 소식지(제00호) 제작	17,000	15,300	90	2019.12.18.	2019.12.26.	○○○
6	보배섬 진도 소식지(제00호) 제작	17,000	15,300	90	2020.02.17.	2020.02.26.	○○○
7	보배섬 진도 소식지(제00호) 제작	17,000	15,300	90	2020.06.24.	2020.06.30.	○○○
8	보배섬 진도 소식지(제00호) 제작	17,000	15,300	90	2020.09.17.	2020.09.25.	○○○
9	보배섬 진도 소식지(제00호) 제작	17,000	15,300	90	2020.12.10.	2020.12.23.	○○○
10	2019 폭염대비 쿨루프(○○경로 당외 2개소) 설치공사 자재구매	14,437	12,993	90	2019.08.08.	2019.08.19.	○○○
11	2019 폭염대비 쿨루프(○○경로 당외 4개소) 설치공사 자재구매	7,804	7,023	90	2019.08.08.	2019.08.23.	○○○
12	2019 폭염대비 쿨루프(○○경로 당외 3개소) 설치공사 자재구매	13,150	11,835	90	2019.08.08.	2019.08.23.	○○○
13	2019 폭염대비 쿨루프(○○경로 당외 3개소) 설치공사 자재구매	9,289	8,360	90	2019.08.08.	2019.08.23.	○○○
14	2019 폭염대비 쿨루프(○○경로 당외 2개소) 설치공사 자재구매	6,913	6,221	90	2019.08.08.	2019.08.23.	○○○
15	○○면 쿨루프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10,945	9,850	90	2020.11.19.	2020.11.30.	○○○
16	○○면 쿨루프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14,850	13,365	90	2020.11.19.	2020.11.30.	○○○
17	○○도 쿨루프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12,034	10,830	90	2020.11.19.	2020.11.30.	○○○
18	○○읍 쿨루프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16,126	14,513	90	2020.11.19.	2020.11.30.	○○○
19	○○면 쿨루프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14,839	13,355	90	2020.11.19.	2020.11.30.	○○○
20	○○면 쿨루프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16,775	15,097	90	2020.11.19.	2020.11.30.	○○○
21	○○도 쿨루프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15,587	14,028	90	2020.11.19.	2020.11.30.	○○○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동종 업체의 참여 기회가 상실되었고, 2인 이상 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낙찰하한율 87.745%)와 비교하면 약 6,891천원¹⁾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관급자재 분할구입을 통한 2단계경쟁 회피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이하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 제3조와 제5조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²⁾이 체결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서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서 구매할 때에는 5개 이상의 업체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이하 “2단계경쟁”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2단계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한 물품을 기준금액인 1억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업무처리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시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까지 제안할 수 있어 2단계경쟁의 방법으로 구매하면 나라장터에 등록된 가격보다 최대 10%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공공기관의 공통 수요품목으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이 맺어진 품목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때에는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2단계경쟁 방법으로 납품업체가 선정되도록 통합 발주하여야 하고, 구매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세무회계과 등)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금속제울타리를 구매하면서 2단계경쟁 방법에 의한 통합발주를 검토하지 않고 기준금액을 1억원

1) 6,891천원 = 275,170천원(계약금액) - 268,279천원(87.745%)

2) 조달청에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의 면에서 동등하게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

미만이 되도록 분할하여 [표 2] “금속제울타리 1억원 미만 분할구매 명세”와 같이 나라장터에서 업체가 등록한 가격 그대로 구매하였다.

[표 2] 금속제울타리 1억원 미만 분할구매 명세

(단위 : 천원)

연번	계약일자	사업명	구매 품목	구입업체	계약금액	예산 세부사업명	발주 부서
계		4건			220,198		
1	2019.02.27.	○○를 소개하는 서,화,창 풍경길 만들기사업(토목, 조경)(1차분)	금속제 울타리	○○○	29,714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 ○○과
2	2019.02.27.	○○를 소개하는 서,화,창 풍경길 만들기(토목,조경)	금속제 울타리	○○○	87,984	"	"
3	2019.12.05.	진도○○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공사	금속제 울타리	○○○	67,240	학교부지활용 통학로 조성사업	○○ ○○과
4	2019.12.05.	○○초등학교 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공사	금속제 울타리	○○○	35,260	"	"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여 2단계 경쟁 방법으로 구매할 경우와 비교하여 최대 22,019천원³⁾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앞으로 물품 계약 체결 시 부당하게 분할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2단계경쟁을 회피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22,019천원 = 220,198천원 × 10%(조달단가로 구매는 100% - 2단계 경쟁시 가능한 최저단가 인 조달단가의 90%)

전라남도 훈계·개선·주의요구

제 목 ○○개발 및 ○○○○○ 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건설교통과, 세무회계과)

훈 계 대 상 자 ① 진도군 ○○○○○과 지방시설○급 ○○○

② 진도군 ○○○○○과 지방시설○급 ○○○

③ 진도군 ○○○○○과 지방시설○급 ○○○

④ 진도군 ○○○○○과 지방세무○급 ○○○

⑤ 진도군 ○○○면 지방세무○급 ○○○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표 1] “진도군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총 1,546건(26,381백만원)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표 1] 진도군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

(단위 : 개, 건, 백만원)

기간	전체계약 업체수	전체 계약건수	전체 계약금액	비고
2018 ~ 2020	138	1,546	26,381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1. 농업용 ○○○○공사 추진 부적정

가. 수의계약 부적정

진도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용 ○○○○을 위해 [별표 1] “농업용 ○○○○공사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총 300건(2,810,700천원)의 공사를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다.

가-1.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등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¹⁾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전체 사업량 및 사업비를 확정하여 설계서에 반영한 다음 통합 발주하여야 하고,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않아야 한다.

가-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건설교통과)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용 ○○○○공사를 추진하면서 [표 2] “연도별 농업용 ○○○○ 공사 발주계획 명세”와 같이 매년 발주계획²⁾을 수립하고 있고 위 사업은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되어

1) 당해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임

2) 5회 : 2018. ○.(날짜 및 문서번호 미기재), 2018. ○○.(날짜 및 문서번호 미기재), 2019. ○. ○○.(문서번호 미기재), 2019. ○. ○.(날짜 및 문서번호 미기재), 2020. ○. ○○. 건설교통과-00000

전체 사업량 및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통합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공사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 농업용 ○○○○공사 발주계획 명세

(단위 : 천원, 개소)

연도별	계획수립일	계약부서 협의를여부	예산액	사업량	사업내용	비고
계			3,121,500	300		
2018(1차)	2018.○. (날짜 및 문서번호 미기재)	여 (경리담당, 과장 협의)	942,000	87	농업용 ○○○○	전액군비
2018(2차)	2018.○○. (날짜 및 문서번호 미기재)	여 (경리담당, 과장 협의)	508,000	46	"	"
2019(1차)	2019.○.○○. (문서번호 미기재)	부	1,171,500	117	"	"
2019(2차)	2019.○○. (날짜 및 문서번호 미기재)	부	300,000	30	"	군비 (70%) 자담 (30%)
2020	2020.○.○○. 건설교통과 -00000	부	200,000	20	"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별표 1] “농업용 ○○○○ 공사 1인 건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사업으로 각각 분할하여 개별 설계서를 작성하였고, 2018년에는 위 사업의 총괄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약부서 협의를 받은 반면, 2019년과 2020년에는 협의조차도 없이 임의로 자체계획을 마련하면서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각각 설계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00건, 3,121,500천원을 계약의뢰하였다.

그리고 [표 2] “농업용 ○○○○공사 발주계획 명세”와 같이 매년 총괄 발주계획을 수립하였다면 당연히 확정된 전체예산으로 계약부서에 계약방법 등을 검토 받아서 통합하여 계약의뢰 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자체검토 보고도 없이 각각의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의뢰 하였다.

한편 진도군(세무회계과)은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건설교통과의 요청대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0건 2,810,700천원의 1인 건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 인하여 통합 발주하여 일반공개 경쟁에 따라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농업용 ○○공사를 수의계약 함으로써 전라남도화진도군(7개 업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동종면허를 보유한 업체(약 280여개)들이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상실되었고, 나라장터를 통해 일반 공개경쟁 입찰하였을 경우보다 총 102,955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농업용 ○○○○사업 예산편성 및 자부담 처리 업무 검토 소홀

진도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과목을 ‘시설비’에 편성하여 2021. 3. 30.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1. 관계 법령(판단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시설비’는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난방,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 또는 시·도비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도군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뭄으로 수리시설이 불안정한 농경지에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할 목적으로 농가들에게 위 ○○사업을 군비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위 ○○사업을 추진하는 인근 시·군인 ○○군과 ○○군 사례를 살펴보면 진도군과 동일한 중형○○ 개발공사인데도 ‘시설비’ 비목이 아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위 ○○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가뭄해소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성격 상 ‘시설비’보다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여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건설교통과)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농업용 ○○○○공사를 추진하면서 위와 같이 예산 편성과목 검토를 소홀히 하여 ‘시설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자 선정(계약 등), 사업비 집행과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 되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진도군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제정으로 자부담(30%)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아 예산편성 후 세출예산으로 집행하여야하는데도 이러한 절차 없이 해당농가로부터 자부담을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 받아 예산편성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회계질서를 투명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농업용 ○○○○공사 사업비 산정 검토 소홀

다-1.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 및 제30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견적을 받되,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공사 등은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견적가격이 당해 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편에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과 비교·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도군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공사에 대해 공사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등 (이하 “설계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가계산 등을 통해 거래 실례가격 등을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농업용 ○○○○공사의 경우에 인근 시군인 ○○군과 ○○군은 중형○○ 1개소 당 7,000천원에서 8,000천원으로 책정하여 지원 한 바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1인 견적으로 체결하는 수의계약 중 공사계약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설계서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금액을 추산한 후 해당 금액과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금액을 비교·검토하는 등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수의계약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세무회계과, 건설교통과)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인 견적으로 체결한 공사 수의계약 300건은 설계서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금액을 추산하여 견적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 등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로 인하여 진도군은 위와 같이 설계서 등을 통해 견적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못하고 인근 시군사례 등을 조사하지 않아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금액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 1공당 시공비용이 인근 시군보다 적게는 약 1,000천원에서 많게는 3,000천원까지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 농업용 ○○○○공사 사업기간 연장 검토 소홀

라-1. 관계 법령(판단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 계약기간의 연장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거나 수행이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였을 때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기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사업기간의 연장은 공사 과업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와 연계되므로 발주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 등으로 연장 또는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건설교통과, 세무회계과)은 위 공사를 수행하면서 2018. 9. 6. 부터 2021. 1. 19.까지 [별표 2] “농업용 ○○○공사 연장 명세”와 같이 총 86건의 일시정지 요청 건이 접수되자 불가항력 등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승인하되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였어야 하는데도 계약업체가 여러 개의 ○○개발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한전 전기공사 유입, 채수량 부족으로 위치변경, 작물재배 등의 사유로 신청한 연장승인 건에 대해 적정여부 검토를 소홀히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등 공정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개발 지연으로 농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에게 영농에 불편을 주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진도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별표 3] “○○○○○ 설치공사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총 45개 공사(632,985천원)를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다.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되, 추정 가격 2,000만원 이하인 공사 등을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전체 사업량 및 사업비를 확정하여 설계서에 반영한 다음 통합 발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건설교통과)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별표 3] “○○○○○ 설치공사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위 사업은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되어 전체 사업량 및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어 통합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사업으로 각각 분할하여 개별설계서를 작성하여 총 45회에 걸쳐 세무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였다.

또한 매년 총괄 발주계획을 수립하였다면 당연히 확정된 전체예산으로 계약 부서에 계약의뢰 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자체 검토보고도 없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각각 설계서를 작성하여 45회에 걸쳐 한 건씩 계약의뢰 하였다.

한편 진도군(세무회계과)은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건설교통과의 요청대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5건 632,985천원에 대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 인하여 통합발주하여 일반공개경쟁에 따라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 설치공사를 수의계약 함으로써 전라남도과 진도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동종면허를 보유한 업체(약 680여개)들이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상실되었고, 나라장터를 통해 일반공개경쟁에 입찰하였을 경우보다 총 25,541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진도군은 ○○별 개발위치가 달라 개별시공이 필요하고, 발주 시 ○○별 설계서를 개별 작성하여 공사량 및 공종을 분할하지 않고 독립적인 단일공사로 분할 발주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³⁾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검토조차도 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지방계약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진도군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 ① 농업용 ○○○○공사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시설○급 ○○○, 지방시설○급 ○○○, 지방시설○급 ○○○, 지방세무○급 ○○○, 지방세무○급 ○○○을 훈계하고(훈계)
- ② 농업용 ○○○○공사를 계속할 경우에 사업예산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시기 바람(제도상 개선)
- ③ 앞으로 「지방계약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과 계약기간 연장승인 업무 등에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3] 생략

3) 당해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임

전라남도

징계·훈계·시정요구

제 목 자동차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건설교통과)

징 계 대 상 자 ① 진도군 ○○○○과 지방행정○급 ○○○

② 진도군 ○○읍 지방사무운영○급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① 진도군 ○○면 지방행정○급 ○○○

② 진도군 ○○○○과 지방행정○급 ○○○

③ 진도군 ○○○○○과 지방행정○급 ○○○

④ 진도군 ○○면 지방행정○급 ○○○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화물운송 종사자, 화물·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행정○급 ○○○은 2020. 1. 1.부터 20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 ○○○

○과에서 화물 및 여객자동차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지방사무운영○급 ○○○은 2019. 8. 22.부터 2020. 6. 30.까지 ○○○○과에서 자동차 과태료 관련 업무 담당자로, 지방행정○급 ○○○은 2016. 4. 14.부터 2019. 6. 30.까지, 지방행정○급 ○○○은 2019. 7. 1.부터 2020. 3. 1.까지, 지방행정○급 ○○○은 2020. 3. 2.부터 2020. 6. 30.까지 ○○○○과에서 유가보조금 관련 업무 담당자로, 지방행정○급 ○○○은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과에서 화물자동차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및 유가보조금 관련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르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면 처분대상자, 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화물운송자격 취소 대상자에 대하여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을 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진도군(건설교통과)은 [표] ‘화물운송자격 취소 대상자 행정처분 미처리 명세’와 같이 2020. 11. 17. ‘화물운송자격 취소 대상자 알림’ 공문을 통해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된 자격 취소 대상자 총 12명 중 8명에 대하여 20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표] 화물운송자격 취소대상자 행정처분 미처리 명세

연번	성 명	면허취소일	취 소 사 유	비고
1	○○○	2019.08.14.	본인사망	
2	○○○	2011.11.23.	음주인피교통사고	
3	○○○	2019.08.	본인사망	
4	○○○	2007.09.27.	음주 만취 운전	
5	○○○	2018.01.27.	음주인피교통사고	
6	○○○	2019.09.03.	정기적성검사(갱신) 미필	
7	○○○		확인불가 (경찰청에 자료 요청 후 확인 처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 근거
8	○○○		확인불가 (경찰청에 자료 요청 후 확인 처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 근거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화물운송자격 없는 자가 불법 운행하도록 방조하는 등 교통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3. 유가보조금 의심자 확인 및 행정처분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에 따르면 화물·여객차주는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을 포함하여 각각 16가지, 10가지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에 따르면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1차 위반 6개월, 2차 이상 위반 1년) 및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FSMS)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정 수급으로 의심되는 거래 내역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인 될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 화물·여객차주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건설교통과)은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의 ‘유형별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명세’와 같이 2018년부터 2021년 3월 31일 감사일 현재까지 화물자동차 30건(920천원), 여객자동차 115건(5,004천원) 등 총 145건(5,924천원)의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 건이 있는데도 단 한 건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상 제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그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가능하도록 방조함으로써 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유가보조금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실추시켰다.

4.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부과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의무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자동차 보유자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 보유자에게 지체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도록 되어 있다.¹⁾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법령 위반자에게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최소 9천원부터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

1)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3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보험개발원 제공)을 해당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 장은 해당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등 가입명령서(또는 가입촉구서)를 발송

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내역을 수신받은 경우 지체없이 해당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명하고 미가입(지연가입)한 일수를 확인하여 [별표 10] ‘자동차 의무보험 등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건설교통과)은 [별표 11]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의무보험 미가입(지연) 원데이터 미수신 명세’와 같이 2020. 1월부터 2020. 6월 기간 동안 의무보험 미가입 원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수신하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 대장에 등록도 하지 않아 과태료 45,135천원의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였다²⁾

또한 [별표 14] ‘최근 3년 간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자 과태료 미부과 명세’와 같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받아 과태료 부과대장에 등록한 의무보험 등 미가입자 14명(28건)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지 않거나 의무보험 등을 미가입(지연가입)한 자동차 보유자(251건)에게 91,58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았다.

5. 타 기관에서 통보받은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자 과태료 미부과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일정 기간³⁾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2) 진도군이 추가 제출한 위 의무보험 미가입(지연) 원데이터 미수신 명세를 확인한 결과, [별표 12], [별표 13]과 같이 의무보험 등 미가입자 53명(106건)에게 의무보험가입을 명하지 않았고, 관련 과태료 784건 45,135천원을 부과 누락하였음

3)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관련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을 말함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피견인 자동차 : 2년(신조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 2년) 등

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연한 차량을 통보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미필)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건설교통과)은 [별표 15] ‘타 자치단체 통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미부과 명세’와 같이 2018. 2. 22.부터 2020. 2. 16. 기간 동안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396건⁵⁾ 중 66건이 자동차 검사지연(미필) 과태료 부과대상임에도 14,82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진도군은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가 목적인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6. 업무 담당팀장 및 담당자의 부적정한 지도·감독 및 업무 처리

가. ○○○의 경우

가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및 유가 보조금 의심자 처리 부적정

위 사람은 2020. 1. 1.부터 20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 화물 및 여객자동차 업무를 총괄하는 ○○○○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진도군은 화물·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수급일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사람은 업무담당자가 상기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지

4)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별표2]

5) 자동차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시·군·구는 위반 사항을 전자문서로 통보하면서 수신처를 법령위반 차량의 관할 시·군·구로 지정하여야 하나, 일부 시·군·구가 수신처를 전국 시·군·구로 지정하여 진도군이 수신한 전자문서 중 상당수는 진도군과 관련 없음. 따라서 과태료 담당자는 수신문서의 내용을 확인,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업무담당자가 2020. 11. 17. ‘화물운송자격 취소 대상자 알림’ 공문을 통해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된 자격 취소 대상자 총 12명 중 8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의 ‘유형별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명세’와 같이 총 145건(5,924천원)의 부정수급 의심 거래 내역 건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담당 기간 동안 유가보조금 업무 담당자가 3차례나 바뀌었는데도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 연찬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가 - 2 자동차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 위반자 행정처분 관리·감독 부적정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진도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르면 본청의 경우 징수관은 부군수, 분임징수관으로 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주관과장으로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에 분임징수관은 건당 400만원 이하를 징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0호 서식6))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징수결의서 서식에는 담당자, 팀장, 분임징수관(과장), 징수관(부군수)으로 결재라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진도군사무처리 전결규칙」 제4조 및 별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책임보험 미가입차 처분에 대한 사항은 실무급이 기안하고 팀장은 검토, 과장은 전결권자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 담당팀장 ○○○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6) 진도군 재무회계규칙 제32조에 징수결의서 서식을 제21-6호로 명시하였으나, 제21-6호 서식은 과오납 총당결의서이고 위 지적사항과 관련된 징수결의서는 제20호 서식이므로 단순 오타로 판단됨.

그런데 위 사람은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 업무담당자 ○○○이 2020. 1.부터 2020. 6.까지 6개월 간 의무보험 미가입 원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수신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

또한 2021. 4. 20. 진도군 수시감사장에서 이 건과 관련한 문답 중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팀장 역할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업무담당팀장으로서 자신의 업무와 역할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은 관련 법령 및 과태료 부과 절차 숙지에 소홀하여 업무담당자의 과태료 부과 절차 미준수 및 과태료 부과 누락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등 업무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였다.

나. ○○○의 경우

위 사람은 2019. 8. 22.부터 2020. 6. 30.까지 ○○○○과에서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진도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자의 정보를 월 3회 수신하여 세외수입프로그램의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대장에 등록한 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지연 가입)자에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수신받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9. 8.부터 2019. 12.까지 정상적으로 의무보험을 미가입(지연가입)한 자동차 보유자의 정보를 수신받아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020. 1월부터 2020. 6월까지의는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보험을 미가입(지연가입)한 자동차보유자의 정보를 수신 받지 않았다.

그 결과 위 사람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53명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서(촉구서)를 발부하지 못하여 관내 주민의 무보험

차 운행이 지속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과태료 784건 45,135,000원을 부과·누락하는 등 진도군 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관련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련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②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업무담당 팀장 ○○○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및 유가보조금 의심내역 건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업무 처리 절차를 알고 있으나, 위반한 화물차주의 행정처분 사항은 담당자가 기 처리한 것으로 알았고, 유가보조금 의심내역 사항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모니터링 권한이 없어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다만 팀 내 인원이 부족하여 담당자들이 업무가 많고 미숙해서 처리하지 못했고, 담당팀장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에 관해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는 유가보조금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사후조치를 중간 검토하는 등 업무 담당팀장으로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여부 확인과 유가보조금 의심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행정상 제재 등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기 통보된 공문을 인지했고 유가보조금 의심내역 처리 절차를 알고 있었기에 담당자가 기 처리했고 모니터링 권한이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업무담당자 ○○○은 이 건과 관련한 문답(2021. 4. 20. 진도군 수시 감사장) 과정에서 “당시 다른 업무가 과중하여 전임자 ○○○에게 과태료 부과 업무를 대신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자신은 과태료 부과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무분장에 명시된 업무를 前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6개월간 지속하

여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前 담당자 ○○○과 면담에도 상기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에 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요구 양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유가보조금 의심자 확인 및 사후조치 미이행 자동차 과태료 관련 자료 미조회 및 과태료 미부과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태만히 한 지방행정○급 ○○○의 행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태만히 한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징계기준의 성실의무위반의 마.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 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 업무 및 과태료 부과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팀장 지방행정○급 ○○○, 과태료 부과를 누락한 담당자 지방사무운영○급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하고(징계)
- 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지방행정○급 ○○○, 지방행정○급 ○○○, 지방행정○급 ○○○, 지방행정○급 ○○○을 훈계하며(훈계)
- ③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미달 대상자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거래 내역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취하시기 바라며, [별표 13]부터 [별표 15]까지 부과 누락된 과태료 151,544,000원에 대한 부과 처분과 2020. 1월부터 2020. 6월까지 미수신한 의무보험 미가입자 정보를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15]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처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환경산림과)

훈 계 대 상 자 ① 전라남도 ○○○○본부 지방환경○급 ○○○
(前 진도군 ○○○○과)

② 진도군 ○○○○과 지방환경○급 ○○○

③ 진도군 ○○○○과 지방환경○급 ○○○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수리를 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또는 필요조치 이행 사항 등을 지도·점검 하고 있다.

지방환경○급 ○○○은 2018. 1. 1.부터 2019. 3. 20.까지 ○○○○과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로, 지방환경○급 ○○○은 2019. 3. 21.부터 2019. 12. 31.까지, 지방환경○급 ○○○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과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관련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1. 건축물의 건

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 5. 녹지 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비산배출 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이하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행정처분의 기준’ 2-다-2)-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사용중지” 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92조 제4의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위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환경산림과)은 [별표]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명세”와 같이 토공사 및 건축공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진도군 ○○면 ○○리 ○○○ ○○채배사 설치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 등 28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그로 인하여 대기 오염 발생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를 발생시켰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지방환경○급 ○○○, 지방환경○급 ○○○, 지방환경○급 ○○○를 훈계하고(훈계)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세무회계과)

훈 계 대 상 자 ① 진도군 ○○○○과 지방행정○급 ○○○

② 진도군 ○○○○과 지방행정○급 ○○○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¹⁾」(이하 “회계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²⁾ 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있다.

지방행정○급 ○○○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지방행정○급 ○○○은 2019. 4. 3.부터 2020. 6. 30.까지, 2020. 10. 13.부터 2020. 12. 31.까지 ○○○과에서 세입세출외현금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1) 개정(2020. 12. 23.)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라 함

2)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 보증금,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 상 필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있는 경비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회계관리 규정」 제77조 제1항에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해당 금원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같은 조 제4항에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규정 같은 조 제6항에 출납원이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보관 시기가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반환청구자에게 ‘반환청구 할 것’을 채권 소멸시효 완성 1개월 전에 1회 이상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 후에도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을 세입에 편입시켜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세무회계과)은 [별표 1]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세입세출외현금 미처리 명세”와 같이 반환기간 5년이 경과한 보관금 등 27건 110,410천원에 대하여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권자에게 채권 소멸시효 완성 1개월 전 반환 청구 가능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해당 금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방치하고 있다.

또한 [별표 2] “세입처리 가능한 세입세출외현금 미처리 명세”와 같이 사무관리상 일시보관금으로 즉시 세입처리하여야 할 34건 116,706천원을 세입 처리 않는 등 사실상 지방세입을 누락하고 있다.

그 결과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방세입으로 편입되지 못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권자에게 반환청구 가능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지방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 ① 세입세출외현금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지방행정○급 ○○○과 지방행정○급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세입세출외현금 중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27건 110,410,672원³⁾과 즉시 세입 조치 가능한 34건 116,706,627원을 세입조치 하고, 앞으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략

3) 당초 위 지적건과 관련 2021. 3. 3. 교부한 확인서에 첨부된 [별표1] 연번 30번부터 35번의 경우, 반납기일 종료 일로부터 감사 처분일(2021.5.) 현재까지 채권소멸시효 5년이 미경과하였으므로 세입조치 대상에서 제외. 해당 건에 대하여 세입조치 여부는 자체 판단후 처리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세무회계과)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표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과 같이 지방세를 부과·징수하였다.

[표 1]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2017년	20,234	19,247	121	866
2018년	22,275	21,157	166	952
2019년	27,773	26,370	133	1,270
2020년	31,463	30,019	185	1,259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귀농인 농지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특별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20킬로미터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

면한 취득세를 추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세무회계과)은 [표 2]와 “귀농인 감면부동산 취득세 추정대상 명세”와 같이 ○○○ 외 3명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감면조건을 위반하였는데도 취득세 1,126천원을 추정하지 않았다.

[표 2] 귀농인 감면부동산 취득세 추정대상 명세

(단위 : 원)

연번	과세대상(토지)	납세자	취득일 (주소이전일)	추정대상 취득세액	추정사유
계	4건			1,126,750	
1	○○읍 ○○리 ○○○번지 1596㎡	○○○	2017.04.24. (2019.06.03.)	450,000	주소이전 (충북 ○○)
2	○○면 ○○리 ○○○번지 201㎡	○○○	2017.03.28. (2020.02.03.)	87,000	주소이전 (광주 ○○)
3	○○읍 ○○리 ○○○번지 2083㎡	○○○	2018.01.31. (2018.08.31.)	480,000	주소이전 (충북 ○○)
4	○○면 ○○리 ○○○번지 1062㎡	○○○	2019.03.28. (2020.12.29.)	109,750	주소이전 (경기 ○○)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작성일(2021. 3. 31.) 기준 가산세 미포함

3.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시홍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임시

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세무회계과)은 [별표 1] “임시용건축물 취득세 추징 명세”와 같이 임시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임시용 건축물 존속기간 1년이 초과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99명이 취득세 102건 31,431천원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4.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누락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했는데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세무회계과)은 [별표 2] “지목변경 취득세 추징 명세”와 같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토지 가액이 증가되었는데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그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56건, 9,183천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위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조속한 시일에 감사결과를 검토하여 부과(추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부과(추징) 누락된 취득세 41,740천원을 부과(추징)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지출 부담 처리

관계기관(부서) 진도군(행정과)

훈 계 대 상 자 ① 진도군 ○○과 지방행정○급 ○○○

② 진도군 ○○과 지방행정○급 ○○○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속 직원(계약직 포함)에게 급여를 지급할 시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납부하고 있다.

지방행정○급 ○○○(20○○. ○○. 충청남도 ○○시 전출)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지방행정○급 ○○○는 2018. 1. 8.부터 2019. 6. 30.까지 ○○과에서 건강보험료 징수 및 납부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자(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7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보수월액 보험료 중 직장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소속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납부할 보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행정과)은 [표]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과다 지출명세”와 같이 매월 소속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 개인부담금의 부족분 59,126천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관부담금(진도군 예산)을 과다 집행하였다.

[표 1]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과다 지출명세

(단위: 원)

구분	개인부담금 고지금액(A) (공단→진도군)	개인부담금 공제액(B) (직원→진도군)	차액(A-B) ¹⁾ (기관부담금 과다지출액)	세입세출외 잔 액 (20.12.31.기준)	기관부담금 과다집행액 처리명세			
					회수가능 ²⁾			회수 불능
					소계	개인추가 공제	즉시 세입	
소계	6,350,293,390	6,291,167,280	59,126,110					
2020	1,494,392,650	1,494,392,650		13,950,150 ³⁾				
2019	1,384,298,380	1,382,784,980	1,513,400		36,286,810	30,503,590	5,783,220	22,839,300
2018	1,206,561,680	1,199,114,250	7,447,430					
2017	1,160,267,400	1,160,267,400						
2016	1,104,773,280	1,054,608,000	50,165,280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소속 직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세금(예산)으로 대납하는 등 예산 낭비 및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도군에 납부 고지한 개인부담금 금액(A)보다 실제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B)이 적어 발생한 차액으로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관부담금을 과다지출

2) 진도군은 회수가능 금액을 산출하여 제출하면서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예산낭비액을 회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3) 2020년 연말정산 분할납부 잔액 8,166,930원 포함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회수 가능한 기관부담금 초과집행액을 회수하고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 ① 건강보험 기관부담금을 과다 지출한 지방행정○급 ○○○, 지방행정○급 ○○○를 훈계하고(**훈계**)
- ② 건강보험료 과다지급액 중 회수 가능한 36,286,810원은 조속히 회수하시고,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진도○○○ 위험구역 옹벽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문화예술체육과)

훈 계 대 상 자 진도군 ○○○○○○과 지방행정○급 ○○○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2018. 6월부터 2019. 9월까지 진도○○○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진도○○○ 위험구역 옹벽 설치공사(이하 “옹벽 설치공사”라 한다)를 [표 1] “옹벽 설치공사 계약 명세”와 같이 시행하였다.

[표 1] 옹벽 설치공사 계약 명세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계약일	사업기간	사업내용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대표자)
2건				125,295	
진도○○○ 위험구역 옹벽 설치공사(1차)	2018.06.21.	2018.06.26. ~ 2018.12.26.	L=66m H=4m	68,991	○○○
진도○○○ 위험구역 옹벽 설치공사(2차)	2019.06.25.	2019.06.28. ~ 2019.09.25	L=35m H=4m	56,304	○○○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행정○급 ○○○은 2018. 9. 1.부터 2020. 1. 1.까지 ○○○○○○과에서 문화 정책 관련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장 제1절 제5호에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6절에 따르면 해당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예산 편성 및 계약 체결 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적정한 사업수행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공사이행 중 당초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하는 등 법령 등에서 정하는 관련절차에 맞게 사업추진 및 예산을 집행하여 투입된 예산이 손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문화예술체육과)은 계약상대자인 ○○건설(유)의 실정보고¹⁾에 따라 원활한 배수를 위한 수로관 설치 등의 사유로 [표 2] “옹벽 설치공사(1차) 설계변경 명세”와 같이 2018. 10. 18. 설계변경(증 11백만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설계에 반영된 옹벽 설치 물량을(전체 공사의 약 27%) 삭제하였다.

1) (유)○○건설/진도 ○○○ 위험구역 옹벽 설치공사 실정보고 관련건(2018.10.) 정확한 날짜 확인 불가

[표 2] 옹벽 설치공사(1차) 설계변경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계약금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2018	68,991	2018.06.21.~ 2018.10.22.	• 수평길이 66m, 면적 278.7㎡	
			• <토공> 터파기 364㎡ 되메우기 82㎡ 순성토 667㎡ 성토 667㎡	• <옹벽공> 보강토블록(표준) 272.1㎡(2,803ea) 보강토블록(캡형) 6.6㎡(136ea)
2018 변경 (1차)	79,700 (증)10,709	2018.06.21.~ 2018.12.26. (60일 연장)	• 수평길이 48m, 면적 176.6㎡ (수평길이 △18m, 면적 △102.1㎡)	
			• <토공> 터파기 756㎡ 되메우기 315㎡ 유용토 365㎡ 보강토 805㎡	• <옹벽공> 보강토블록(표준)171.8㎡(1,770ea) 보강토블록(캡형) 4.8㎡(99ea)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18년 1차 공사 시행 당시 감액된 물량(18m)을 2019. 8. 25. 2차 공사 (35m)에 포함하여 발주하면서 1차 공사 종점과 2차 공사 시점의 연결부를 메우기 위해 기 시공한 1차분 콘크리트 옹벽 블록과 중복 시공 구간이 발생하여 중복 시공 비용 약 7,538천원²⁾의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옹벽 설치공사의 위험구역 개선 사업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옹벽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시기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통해 각 사업에 대하여 통합 발주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하고 신속하게 옹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건의 공사로 분할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설계변경 요건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확정된 1차 공사의 옹벽 물량을 부적정하게 설계변경하고 1차 공사 시 감액한 물량을 2차 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등 계약 질서를 훼손하며 당초부터 사업추진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단일공사로 발주했을 경우(낙찰하한율 87.745%)보다 약 10,724천원³⁾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2) 불필요한 시공구간 콘크리트 옹벽 블록 자재 및 시공내역 산출 (당초 78,045천원 조정 70,477천원 = 차액 7,538천원)

3) 10,724천원 = 125,295천원 - 114,571천원(예정가격의 87.745%)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행정○급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 라 남 도

개선·주의요구

제 목 사단법인 ○○○○○○○○○○○○ 운영비 지원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관광과, 기획예산과)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진도군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사단법인 ○○○○○○○○○○○○(이하 “○○○”라 한다)에 보조금 2,707,466천원(운영비 425,052천원, 경상사업비 2,282,414천원)을 지원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고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3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원에 관한 해석기준¹⁾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고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으나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한하여 이를 법령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065(2014. 9.16.), 「지방재정법」 32조의2 제2항의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 해석기준 통보

따라서 진도군은 보조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하려면 「지방재정법」 제32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른 조례 포함)에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관광과)은 2018. 5월부터 2021. 3월까지 관련 법령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진도군 사단법인 ○○○○○○○○○○ 지원 조례」를 근거로 협의회에 425,052천원의 보조금을 운영비 목적으로 부당하게 교부하였다.

또한 기획예산과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부서(관광과)의 협의회 운영비 관련 보조금 예산요구에 대하여 예산요구의 근거로 제시된 「진도군 사단법인 ○○○○○○○○○○ 지원 조례」가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조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회 운영비 지원 목적의 보조금 425,052천원을 부적정하게 예산편성하였다.

그로 인하여 법령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는 법인·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① ○○○○○○○○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의 규정에 따른 ○○○○○○○○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한 후 교부하고(법령상 개선)

② 앞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시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 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주민복지과, 지역개발과)

내 용

1. 업무 개요

진도군은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조사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소득·재산이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시장·군수는 매년 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의 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그 밖의 금품은 수급자의 실제소득¹⁾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3편 조사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자동연계²⁾되지 않는 참전유공자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금, 이·통장 직책수당 등은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금액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 이전 소득,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2)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어 수급자의 소득에 자동 반영되나, 지자체 지원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아 별도의 조사 및 자료 입력 필요

에 입력하고 수급자의 실제소득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도군은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진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월 5만원, 2018년 11월부터는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이장 수당³⁾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연 1회 이상 수급자의 소득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현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실제소득에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주민복지과)은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복지대상자의 실제소득에 산정하지 않아 [표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과다지급 명세”와 같이 ○○면에 거주하는 ○○○ 등 10명에게 생계급여 18,69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과다지급 명세

(단위 : 원)

대상자	주 소 (읍면동)	생년월일	진도군 지원금 실제소득 미산정현황		과다지급	
			구분	지급 개시	개월	금액
10명						18,690,000
○○○	○○면	00.00.00.	이장수당	2020. 1. ~ 2021. 2.	14	1,400,000
○○○	○○면	00.00.00.	참전유공자명예수당	2020. 5. ~ 2021. 3.	11	770,000
○○○	○○면	00.00.00.	참전유공자명예수당	2018. 5. ~ 2021. 3.	35	2,330,000
○○○	○○면	00.00.00.	참전유공자명예수당	2018. 5. ~ 2021. 3.	35	2,330,000
○○○	○○읍	00.00.00.	참전유공자명예수당	2018. 5. ~ 2021. 3.	35	2,330,000
○○○	○○읍	00.00.00.	참전유공자명예수당	2018. 5. ~ 2021. 3.	35	2,330,000
○○○	○○읍	00.00.00.	참전유공자명예수당	2018. 5. ~ 2021. 3.	35	2,330,000
○○○	○○면	00.00.00.	참전유공자명예수당	2018. 5. ~ 2021. 3.	35	2,330,000
○○○	○○면	00.00.00.	참전유공자명예수당	2018. 5. ~ 2021. 3.	35	2,330,000
○○○	○○면	00.00.00.	참전유공자명예수당	2021. 1. ~ 2021. 3.	3	210,000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사회보장급여 지급 업무 부적정

3) 2020년부터 이·통장 등 직책수당(회의수당 포함)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시 20만원 범위 내 공제 적용

1)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액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보다 작으면 차액분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복지급여 신청을 성실하게 하였는데도 보장기관이 반영을 누락하는 등 그 귀책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복지급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고,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주민복지과)은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면에 거주하는 ○○○ 등 6명에게 [표 2]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 생계급여 과소지급 명세”와 같이 9개월분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5,825,59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2]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 생계급여 과소지급 명세

(단위 : 명, 원)

연도	대상자	주 소 (읍면동)	가구 원수	긴급 생계지원액	최초 신청일	월 지급액	최초지급		과소지급	
							지급일	지급액	개월	금액
계	6명								9	5,825,590
2019	○○○	○○면	1	-	2019. 5.28	512,102	'19. 7.19	1,024,220	1	512,010
2020	○○○	○○면	1	-	2020. 8.28	527,160	'20.10.20	527,160	2	1,054,320
2020	○○○	○○면	2	-	2020. 2. 7	244,300	'20. 4.20	242,300	2	488,600
2020	○○○	○○면	1	660,339	2020. 2.22	527,160	'20. 5.20	527,160	1	921,140
2020	○○○	○○면	1	-	2020. 5.28	527,160	'20. 8.20	1,052,320	2	1,052,320
2020	○○○	○○면	2	-	2020. 9.19	897,600	'20.11.20	897,600	1	1,795,200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면 ○○○ 수급자에게는 [표 3]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 생계급여 과다지급 명세”와 같이 생계급여 454,32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3]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 생계급여 과다지급 명세

(단위 : 명, 원)

연도	대상자	주 소 (읍면동)	가구 원수	긴급 생계지원	최초 신청일	월 지급액	최초지급		과다지급	
							지급일	지급액	개월	금액
2020	○○○	○○면	1	164,216	'20.11.15	248,350	'21. 1.20	992,780	1	454,320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장제급여 미지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에 따르면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를 실제로 실시하는 사람에게 1가구당 750,000원(2020년부터 800,000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실제 장제를 책임진 자가 장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등 조치를 통하여 장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주민복지과)은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사망자 7명의 수급자 가족 또는 장례를 책임진 자에게 [표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미지급 명세”와 같이 총 5,450,000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양가족이나 실제 장례를 책임진 자에게 적극적으로 장제급여 신청을 안내하지 않는 등

장제급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미지급 명세

(단위 : 원)

연도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	사망신고일	미지급	
						금 액	사유
소계	7명					5,450,000	
2019	○○○	00.00.00.	○○면	'19. 1. 2	'19. 1. 8	750,000	미신청
	○○○	00.00.00.	○○면	'19. 8. 6	'19. 9. 2	750,000	"
	○○○	00.00.00.	○○면	'19. 4.19	'19. 4.25	750,000	"
2020	○○○	00.00.00.	○○면	'20. 9. 1	'20. 9. 7	800,000	"
	○○○	00.00.00.	○○면	'20. 3. 7	'20. 3.10	800,000	"
	○○○	00.00.00.	○○읍	'20. 5.11	'20. 5.20	800,000	"
	○○○	00.00.00.	○○읍	'20.11.15	'20.12.14	800,000	"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주거급여 부담 지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 및 「주거급여사업 안내」 제4편 주거급여의 실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수급권은 인정하되 임차(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수급자의 주거실태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1인 단독 주거급여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과다 지급된 급여는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지역개발과)은 주거급여 대상자 중 ○○읍에 거주하는 ○○
○ 등이 2019. 12. 1.부터 2020. 12. 31.까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
원하여 장기 입원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을 중단하여야 했는데도 수급자 주거 변
동사항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표 5]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부담 지급 명세"와 같
이 4명의 수급자에게 총 853,200원의 주거급여를 부담하게 과다 지급하였다.

[표 5] 장기입원자 주거급여 부담 지급 명세

(단위 : 명, 원)

연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입원일	퇴원일	부담지급	
						개월	지급액
계	4명					9	853,200
2020	○○○	00.00.00.	○○읍	'19.12. 1	'20. 3. 9	1	94,800
	○○○	00.00.00.	○○면	'20. 7. 1	'20.12.31	3	284,400
	○○○	00.00.00.	○○면	'20. 8. 1	'20.12.31	2	189,600
	○○○	00.00.00.	○○면	'20. 7. 1	'20.12.31	3	284,400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장애인연금 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연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장애인연금 및 수당을 지급할 때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주민복지과)은 신규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면 ○○
○ 등 10명에게 [표 6] "장애인연금 과소지급 명세"와 같이 장애인연금 6,140,000
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6] 장애인연금 과소지급 명세

(단위 : 원)

연도	대상자	주 소 (읍면동)	최초 신청일	월 지급액	최초지급		과소지급	
					지급일	지급액	개월	금액
계	10명						27	6,140,000
2019	○○○	○○면	'18. 7.24	40,000	'19. 2.20	40,000	3	120,000
2019	○○○	○○면	'19. 2.12	40,000	'19. 3.25	40,000	1	40,000
2019	○○○	○○면	'19. 1. 5	40,000	'19. 5.20	40,000	4	160,000
2020	○○○	○○면	'20. 1. 7	380,000	'20. 3.20	380,000	2	760,000
2020	○○○	○○면	'20. 1. 8	380,000	'20. 3.20	380,000	2	760,000
2020	○○○	○○면	'20. 1.21	380,000	'20. 8.20	380,000	7	2,660,000
2020	○○○	○○면	'20. 2.21	370,000	'20. 4.20	370,000	2	740,000
2020	○○○	○○출장소	'20. 1.30	40,000	'20. 3.20	40,000	2	80,000
2020	○○○	○○출장소	'20. 1.30	40,000	'20. 3.20	40,000	2	80,000
2021	○○○	○○면	'20.12. 1	370,000	'21. 2.19	370,000	2	740,000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수급자 23명에게 과소 지급된 생계·장제급여·장애인연금 17,415,590원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15명에 대해 19,997,520원을 회수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보장급여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식품·공중위생 업무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관광과)

내 용

1. 업무 개요

진도군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식품·공중 위생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고 [표] “식품·공중위생 업소 명세”와 같이 위생업소에 대하여 지도 관리를 하고 있다.

[표] 식품·공중위생업소 명세

(단위 : 개소)

총계	식품 위생업소									공중 위생업소					
	소계	일 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유흥 단란 주점	집 단 급식소 (위탁)	제 과 점	식품 제조 가공	즉석 판매 제조	기타	소계	숙 박 업	목 욕 장	이 미 용	세탁	건물 위생 관리
1,089	931	487	90	43	39	8	61	89	114	158	38	8	93	15	4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식품·공중위생업주 위생교육 미이수자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식품위생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공중위생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는 매년 소정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식품·공중 위생업소에 대하여 상시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업주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생교육을 미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관광과)은 [별표 1]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 미이수 명세”와 같이 2018년 28개소, 2019년 15개소로 총 43개소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20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 3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식품 등을 취급하는 위생업소 등에서 식중독 등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등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거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상태 점검, 관내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 기준 위반 행위, 부정 불량 식품 등 수거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 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 수당은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소비자단체에서 추천받아 위촉하고 활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관광과)은 소비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전국○○○연합회 진도군지부 등 4개의 단체로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을 추천받아 [별표 2] “소비자단체 소속이 아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명세”와 같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부적정하게 위촉하였다.

또한 [별표 3] “소비자단체 소속이 아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수당 지급 명세”와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활동수당 29,9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식품위생법」 제41조를 위반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39명의 위생업소 영업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를 각 200,000원씩 총 7,800,000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3] 생 략

전라남도

징계·훈계요구

제 목 수산물○○○○시설사업 등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수산지원과)

징 계 대 상 자 진도군 ○○○○과 지방환경○급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진도군 ○○○사업소 지방행정○급 ○○○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김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수출확대 및 내수 시장 개척을 위해 수산물○○○○시설사업 및 마른김 ○○용수 정수시설사업에 10,016백만원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수산물○○○○시설사업 등 수의계약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민간보조사업자들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에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 미만이면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민간보조사업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은 진도군에 위탁하여 계약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 미만이면 「지방계약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한편 진도군은 2018. 4. 5.부터 4. 13.까지 실시한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 미만 사업인 2015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을 보조사업자가 수의계약하여 156,243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사유로 당시 업무 담당자가 '경징계' 요구를 받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라는 '주의요구'도 받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수산지원과)은 2018. 9. 12. 보조사업자 ○○수산2 ○○○이(주)○○○○(대표 ○○○)과 441,530,000원으로 수의계약하게 하는 등 [표 1] “수산물○○○○시설사업 등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계약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1] 수산물○○○○시설사업 등 수의계약 명세

(단위 : 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계약일	계약업체 (대표)	예정금액	계약금액(A) (낙찰율 100%)	입찰계약 예상금액(B) (낙찰율 87,745%)	예산낭비액 (A-B)
2개소				833,329,000	833,329,000	731,204,500	102,124,500
수산물 ○○○○시설	○○수산2 ○○○	2018.9.12.	(주)○○○○ (○○○)	441,530,000	441,530,000	387,420,500	54,109,500
마른김 ○○용수 정수시설	○○수산 ○○○	2018.4.28.	(주)○○○○ (○○○)	391,799,000	391,799,000	343,784,000	48,015,000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다.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은 2017. 7. 8.부터 2018. 8. 31.까지 약 1년 1개월간 ○○○○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의 보조비율을 보조금 교부권자인 전라남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 변경¹⁾하였고, 관련 업무가 2018. 9. 1. ○○○○과에서 ○○○○○과로 이관되자 후임자에게 변경내용을 사무인계하면서 2건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도록 업무를 처리하였다.

특히 2018. 4. 5.부터 4. 13.까지 실시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수산물 ○○○○○시설사업의 수의계약 부적정 건으로 담당자는 ‘경징계’, 진도군은 ‘주의’ 처분요구를 받았는데도 2018년에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동종 자격을 보유한 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회가 상실되었고 102,124,500원의 사업비가 낭비되는 등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수산물○○○○시설사업 보조금 정산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1) 당초 : 국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 변경 : 국비 25%, 군비 25%, 자부담 50%

또한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18년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제Ⅱ조 제3항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의 지원내용은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신규시설, 기존 시설에 HACCP 도입 등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가공기계류 구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게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 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수산지원과)은 [표 2] “수산물○○○○시설사업 목적외 사용 명세”와 같이 2018. 9. 12. 수산물○○○○시설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수산2○○○이 (주)○○지게차전남판매(대표 ○○○)와 사업지원 대상이 아닌 지게차를 33,990,000원으로 수의계약 체결하여 목적외 부당 구입하였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정산 처리하였다.

[표 2] 수산물○○○○시설사업 목적외 사용 명세

(단위 : 원)

사 업 명	보조사업자	계약업체 (대표)	예정금액	계약일	계약금액 (낙찰율)	비고
수산물○○○○시설	○○수산2 ○○○	(주)○○지게차 전남판매(○○○)	33,990,000	2018.9.12.	33,990,000 (100%)	지게차 구입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다.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은 2018. 9. 1.부터 2020. 6. 30.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과에서 수산물○○○○시설사업 업무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사업지원대상이 아닌 지게차를 보조금 목적외 사용하여 부당 구입하였는데도 위반 사실을

모든 채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2018년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의 관련사업 지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쉽게 알수 있었는데도 20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보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저해되고 33,990,000원의 보조금이 목적외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징계요구 양정

수산물○○○○시설사업 등에 대해 부적정하게 수의계약 처리하게 한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 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 ① 2018년 전라남도종합감사 지적사항인 수산물○○○○시설사업의 수의계약 부적정 사례가 재발되도록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환경○○급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하고(징계)
- ② 수산물○○○○시설사업 보조금 정산처리를 소홀히 한 지방행정○○급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진도군○○회 및 (사)○○○○회진도군지회 보조금 관리·감독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문화예술체육과, 주민복지과)

내 용

1. 업무 개요

진도군은 관내 전문체육 활성화와 선수육성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표 1] “진도군○○회 및 (사)○○○○회진도군지회 보조금 지원 명세”와 같이 진도군○○회에 보조금 137,000천원을 지원하고 (사)○○○○회진도군지회에 보조금 633,618천원을 지원하며 관리·감독하고 있다.

[표 1] 진도군○○회 및 (사)○○○○회진도군지회 보조금 지원 명세

(단위 : 천원)

연도	진도군○○회			(사)○○○○회진도군지회
	계	차량유지비	사무실운영비	
계	137,000	42,000	95,000	633,618
2018년	26,000	6,000	20,000	200,752
2019년	37,000	12,000	25,000	104,742
2020년	37,000	12,000	25,000	142,633
2020년	37,000	12,000	25,000	185,491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진도군○○회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1) 차량운영 보조금 집행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진도군○○회에 지원되는 차량유지 보조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문화예술체육과)은 진도군○○회가 카니발 디젤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표 2] “진도군○○회 차량운영 보조금 목적외 사용 명세”와 같이 8건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2건의 3개월 간격의 타이어 교체 등 총 14건 2,299천 원을 부당 사용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 및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진도군○○회 차량운영 보조금 목적외 사용 명세

(단위 : 원)

집행일	세부 내용	거래처	증빙	집행액
	14건			2,299,000
2018.00.00.	주유비(휘발유)	○○주유소	카드	90,000
2018.00.00.	주유비(휘발유)	○○주유소	카드	98,000
2018.00.00.	주유비(휘발유)	○○농협	카드	15,000
2018.00.00.	주유비(휘발유)	○○○○주유소	카드	80,000
2019.00.00.	주유비(휘발유)	○○주유소	카드	90,000
2019.00.00.	주유비(휘발유)	○○○주유소	카드	92,000
2019.00.00.	주유비(휘발유)	○○○주유소	카드	98,000
2019.00.00.	주유비(휘발유)	○○○○	카드	70,000
2019.00.00.	타이어 2개	○○타이어타운 ○○점	카드	380,000
2019.00.00.	타이어 4개	○○타이어타운 ○○점	카드	800,000
2019.00.00.	배터리 교체	○○자동차공업사	카드	60,000
2020.00.00.	오일엔진, 건전지 등	○○○○큐	카드	138,000
2020.00.00.	오일엔진 등	○○○○큐	카드	90,000
2020.00.00.	배터리	○○자동차	카드	198,000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사무실운영 보조금 정산 관리·감독 소홀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매년 지원되는 진도군○○회 사무실운영 보조금을 관계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사용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문화예술체육과)은 진도군○○회에서 사무실운영 보조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하지 않고 운영비로 일괄 편성하여 [별표] “진도군○○회 사무실운영 보조금 집행관리 소홀 명세”와 같이 사무실운영과는 무관한 홍보특산품 구입 등 64건 11,948,217원을 집행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정산 처리 하는 등 보조금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사)○○○○회진도군지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

가. 관계 법령(관련 근거)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집행 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와 집행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었는지 등을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주민복지과)은 (사)○○○○회진도군지회가 [표 3] "(사)○○○○회진도군지회 보조금 부담 집행 명세"와 같이 보조금 지출 증빙자료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사업주와 수납자가 상이하거나 지출결의서에 영수증도 없이 지출하는 등 20건 4,983,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3] (사)○○○○회진도군지회 보조금 부담 집행 명세

(단위 : 원)

사 업 명	집행일	집행액	부당집행액	적 요	부 당 유 형
20건		5,523,000	4,983,000		
○○○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2020.00.00.	200,000	80,000	○○부장 활동여비 4월	관내출장 일비 4만원 지급
	2020.00.00.	540,000	120,000	○○부장 활동여비 12월	관내출장 일비 4만원 지급
○○회 운영지원	2019.00.00.	720,000	720,000	2019년도 정기총회비 (○○면) 선물구입	영수증 없음
	2020.00.00.	260,000	260,000	6개분회 정기총회(○○)	간이영수증 사업주와 수납자 상이
	2020.00.00.	600,000	600,000	6개분회 정기총회(○○)	간이영수증 사업주와 수납자 상이
	2019.00.00.	81,000	81,000	○○대학 현장 학습(생수음료)	영수증 없음
	2020.00.00.	160,000	160,000	6개분회 정기총회(○○)	간이영수증 사업주와 수납자 상이
○○회 운영지원(조도)	2019.00.00.	150,000	150,000	입학식 돼지고기 구입	간이영수증 사업주와 수납자 상이
	2019.00.00.	73,000	73,000	입학식 중식 재료구입	간이영수증 사업주와 수납자 상이
	2019.00.00.	60,000	60,000	4.12. 교육 중식 반찬 구입	영수증 없음
	2019.00.00.	290,000	290,000	○○교육 강사 점심식사	간이영수증 사업주와 수납자 상이
	2019.00.00.	35,000	35,000	○○교육 국거리 김 구입	영수증 없음
	2019.00.00.	150,000	150,000	○○교육 돼지고기 구입	영수증 없음
	2019.00.00.	40,000	40,000	수료증 상장지 구입	간이영수증 사업주와 수납자 상이
	2019.00.00.	264,000	264,000	수료증 케이스 구입	영수증없음
	2019.00.00.	360,000	360,000	수료식 중식비	영수증 없음
	2020.00.00.	540,000	540,000	상품대(○○○ 외 17명)	영수증 없음
	2020.00.00.	450,000	450,000	상품대(○○○ 외 14명)	간이영수증 사업주와 수납자 상이
	2020.00.00.	400,000	400,000	입학식 돼지고기 구입	영수증 없음
	2020.00.00.	150,000	150,000	분교장 명패 제작	견적서와 지출금액 상이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했으며 예산의 건전하고 효율적

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 ① 당초 보조금 목적외로 사용한 진도군○○회 보조금 2,299,000원과 (사)○○○
○○회진도군지회 보조금 4,983,000원을 회수하고(시정)
- ② 앞으로 진도군○○회에 대해 지원된 보조금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
성·운영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
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농업지원과)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영농계획서를 검토하고 신청농지에 대해 현지 확인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3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해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생 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

서 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사업범위¹⁾를 벗어나면 해당 법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 실시로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증명을 발급하며, 이 경우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한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1조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농업지원과)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부동산 매매업 등 사업범위 외 사업이 명시된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였는지를 일정 기간을 두고 행정정보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매년 실시하는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 확인하여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지 확인 후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농업지원과)은 [별표] “농지 취득한 농업법인 등기사항을 미변경한 법인 명세”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과 ○○(주) 등 11개 법인이 농지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20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범위 외 사업을 등기상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3. 농업법인 취득 농지 이용실태조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10조에 따르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1)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군수와 읍·면장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기준은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가 조사 대상이며, 작물 재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고 투기목적 농지의 조사 등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농업법인이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이용실태 조사 기간에 농업경영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농업지원과)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6개 농업법인이 취득한 139필지 농지에 대하여 2020년 이용실태조사에서 2개 법인²⁾이 취득한 농지를 누락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 3. 30. 감사일 현재 25필지에 대하여 이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표] “농업법인 농지취득 및 이용실태 명세”와 같이 진도군 ○○면 ○○리 0000번지 등 3개 법인 소유 4필지가 휴경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농업법인 농지취득 및 이용실태 명세

법인명	법인주소지	농지소재지	이용실태	취득세 감면여부
3개 법인		4개 필지		
(유) ○ ○ ○ 농 업 법 인	전남 ○○	진도 ○○면 ○○리 0000번지	휴경	감 면
		진도 ○○면 ○○리 0000번지	휴경	감 면
○ ○ ○ ○ 개 발	경기 ○○	진도 ○○면 ○리 00번지	휴경	미감면
○ ○ ○ ○ ○ ○	전남 ○○	진도 ○○면 ○○리 00번지	휴경	감 면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농업경영보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 했다는 우려가

2) (유)○○을 주는 ○ 농업법인, (유)○○

있는 농업법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 효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부동산 매매업 등 사업범위 외 사업이 명시된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였는지를 일정 기간을 두고 행정정보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매년 실시하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휴경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후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요구

제 목 농업·기술지도 분야 민간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농업지원과, 경영지원과, 기술개발과)

훈계대상자 ① 진도군 ○○○○과 지방농업○급 ○○○

② 진도군 ○○○○과 지방농촌○○○ ○○○

③ 진도군 ○○○○과 지방농촌○○○ ○○○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지역 우수 농산물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유통·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지방농업○급 ○○○은 2018. 9. 1.부터 2020. 12. 31.까지 ○○○○과에서 논 ○○○ 기계장비 지원사업 업무 담당자로, 지방농촌○○○ ○○○은 2018. 1. 1.부터 2019. 7. 31.까지 ○○○○과에서 ○○○○○○ 향상 주산단지 육성사업 업무 담당자로, 지방농촌○○○ ○○○은 2018. 11. 1.부터 2020. 12. 31.까지 ○○○○과에서 ○○○ 작목 단지 조성사업 업무 담당자와 업무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2. 시설·기계장비 등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¹⁾」(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22호, 2020. 1. 2.) 제

21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²⁾」(훈령 제352호, 2020. 2. 27.) 제57조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2천만원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2억원·전문공사 1억원·일반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규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 공고문 등록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민간전용 전자입찰시스템(누리장터)이 아닌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5. 민간자본이전 편에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공사, 그 밖의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규정 등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의 시급성,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되므로 사전에 계약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에 공사 8천만원, 물품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및 물품 구입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2억원 이하 시설(물품) 시공

1) 구 지침(공고 제2018-219호, 2019. 1. 2.) : 물품(용역) 5천만원 초과, 시설공사 2억원 초과

2) 구 기본규정(훈령 제337호, 2019. 9. 26.) : 물품(용역) 5천만원 초과, 시설공사 2억원 초과

(납품)업체 선정 시 진도군에 계약 대행을 의뢰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시 관련 규정에 맞게 공고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농업지원과, 경영지원과, 기술개발과)은 ○○○농업협동조합 등 8개 보조사업자가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아래와 같이 진도군에 계약 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은 [표 1] “누리장터 등 이용 계약 체결 명세”와 같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민간전용 전자입찰시스템(누리장터)에 공고하여 최저가 입찰 참가자와 2건 계약 체결하였고, 농협 자체 인터넷망인 ‘농협아리오피스’에 공고하고 최저가 입찰 참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누리장터 등 이용 계약 체결 명세

(단위: 천원)

구분	계약방법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계약금액	최저가 낙찰률
합계		3개 사업			811,044	
농정	누리장터	2018 ○○○○○○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업 협동조합	친환경퇴비시설	336,281	61.0%
농정	누리장터	2019년 ○○○공동 경영체 육성지원	○○○농업 협동조합	선별장 리모델링	249,750	73.3%
농정	농협아리오피스	2020년 ○○○공동 경영체 육성사업	○○○농업 협동조합	포장라인시스템 설치	225,013	72.4%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은 나라장터를 이용하면서 [표 2] “예정가격 미작성 및 적격심사 없이 계약 체결 명세”와 같이 예정가격을 보조사업자가 임의 결정하고

적격심사 없이 최저가 입찰 참가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예정가격 미작성 및 적격심사 없이 계약 체결 명세

(단위: 천원)

구분	계약방법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예정가격	적격심사	낙찰금액	낙찰률
농정	나라장터	2020년 ○○ 시설개선사업	○○농업 협동조합	건축, 기계설비	임의결정	미 실시	1,571,290	91.5%

※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영농조합법인 등 7개 보조사업자의 경우

○○○영농조합법인 등 7개 보조사업자는 기계장비와 시설공사가 공개경쟁 입찰 대상인데도 [표 3] “시설·장비 보조사업 수의계약 체결 명세”와 같이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시설·장비 보조사업 계약 명세

(단위: 천원)

구분	계약방법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계약금액	낙찰률
합계		8개 사업	7개		1,436,456	
농정	수의계약	2020 논 ○○○ 단지화 조성사업	○○○ 영농조합	콩 파종기 등 4종	123,476	100%
농정	수의계약	2018 ○○○○○○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농업 협동조합	스키드로드 구입	72,600	100%
농정	수의계약	2019 ○○○○○○산업 인증경영체 강화사업	○○○○○영농 조합법인	가공공장, 판매장 신축	100,000	100%
농정	수의계약	2020 ○○산업 육성사업	○○○○○ 영농조합법인	썩 홍보체험장	199,200	100%
기술	수의계약	2018~2019년 ○○○○○○ 향상 주산단지 육성	○○○농업협동 조합	콤바인, 포장 설비 등 2종	367,511	100%
기술	수의계약	2019~2020 전국 ○○의 1○○ 1○○작목 육성	○○○○○ 출하회	시설하우스	406,710	100%
기술	수의계약	2019 신소득 ○○○ 작목(○○○○○) 조성	○○○	시설하우스	120,649	100%
기술	수의계약	2020 FTA ○ ○○○○ 시범사업	○○○	농업용 드론 등 7종	46,310	100%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다목적 콤바인 구입 가격 사업성 검토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를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하고 신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분야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등에게 사업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르면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업기계를 구입 할 경우에는 영세율(부가가치세 면제)을 적용받고 농기계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보조사업자가 농기계 구입 품목과 가격을 정하여 사업신청을 하면 농기계 가격이 적정한지 철저히 검토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농업지원과, 기술개발과)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다목적 콤바인 농기계 구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도 [표 4] “다목적 콤바인 구입 가격과 조달청 고시단가 비교 명세”와 같이 2018년 논 ○○○ 기계장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서 ○○○(CT0000A), ○○○○(TH000)이 조달청에 고시한 단가(부가가치세 포함)보다 신청금액이 적게는 3,212천원부터 많게는

18,780천원이 높은데도 구입가격 조정 없이 구입하도록 하였고, 2020년 ○○ ○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으로 구입한 다목적 콤바인 경우 기계 구입 후 별도 개조
를 하여야 하는데도 개조 금액이 정확하지 않는 가운데 임의적으로 확정하고 전
자입찰을 통해 구입하였다.

또한 조달청 고시단가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적게는 12,791천원부터 많게는
25,902천원 정도를 높게 구입하였는데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4] 다목적 콤바인 구입 가격과 조달청 고시단가 비교 명세

(단위: 천 원)

사 업 명	보 조 사업자	구입 금액 (A)	기종 /회사명	조달청고시단가		가격차액		비 고
				부가세 포함 (B)	영세율 적용 (C)	부가세 포함 (A-B)	영세율 적용 (A-C)	
합 계	5명	507,301	2종	429,804	300,614	37,984	54,595	
2018년 논 ○○○ 기계·장비 지원사업	○○○	99,000	CT00000A /○○○	95,788	86,209	3,212	12,791	
2020년 ○○ ○○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주)○○○ ○○○	135,301	CT0000A /○○○	95,788	86,209	-	-	개조 포함
2018년 ○○○○○○ 항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사업	○○○ 농협	103,000	CT00000A /○○○	95,788	-	7,212	-	영세율 미적용
2018년 ○○○○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	90,000	TH000 /○○○○	71,220	64,098	18,780	25,902	
2019년 ○○ ○○단지 전용 수확기 지원사업	○○○	80,000	TH000 /○○○○	71,220	64,098	8,780	15,902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농기계 납품업체에 적게는 3,212천원부터 많게는 25,902천원까지 부
당 이익을 주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4. 보조금으로 지원된 중요재산 사후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며,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20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서」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중앙단위 사업이행 및 점검 의무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행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이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시설·장비 등 주요 시설물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관리 상태는 양호한지를 연 1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결과를 보고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농업지원과, 경영지원과, 기술개발과)은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2018~2020 보조지원 시설물 등 사후관리 명세”와 같이 2018년 논 ○○○ 기계장비사업 등 14개 사업은 출장결과보고서도 없이 수기대장에 ‘이상없음’으로 관리되어 현장 점검 및 시설물 활용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 등 11개 사업은 출장결과보고서는 작성되어 있으나 목적대로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작성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에 2021. 3. 24. 감사 기간 중에 2018~2019년 ○○ ○○○ 향상 지역전략주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 한 결과 소포장 자동화장비, 두류 선별기, 콤바인 등 13종의 기계 장비들은 사용한 실적이 없었고, 설치가 완료되지 않는 기계들이 있는데도 ‘이상없음’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 논 ○○○ 기계지원사업(보조사업자 ○○○)으로 지원한 콤바인이 2019. ○. ○○. 전복사고로 폐기 처분하고 피해 보상금으로 보험료를 받았는데도 20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장비에 대해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방치되고 있어 보조금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논 ○○○ 기계장비 지원사업, ○○ ○○○ 향상
주산단지 육성사업, ○○○ 작목 단지 조성사업 등 계약 업무와 사후관리 업무
를 소홀히 한 지방농업○급 ○○○, 지방농촌○○○ ○○○, 지방농촌○○○ ○
○○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안전생활지원과)

훈 계 대 상 자 진도군 ○○○○○○과 지방행정○급 ○○○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향토문화회관” 등 36개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¹⁾(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대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행정○급 ○○○은 2018. 9. 1.부터 2019. 12. 31.까지 ○○○○과에서 시설물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및 민간관리시설물 등록·관리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시설물안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공관리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민간관리 주체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 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1)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 (최초 1995. 4. 6.)

또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6조에 민간관리 시설물 주체가 민간관리시설물 등록,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입력·보고하고, 취합기관 및 제출기관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승인·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진도군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을 실시하고, 민간관리 시설물 지정·고시 또는 해지 및 시설물정보관리종합정보시스템 입력 업무를 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안전생활지원과)은 [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명세”와 같이 2018년부터 20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 연도별 관리대상 총 105개 시설물 중 38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데도 관리주체들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안내·촉구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시설물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명세

(단위 : 개소)

연 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대상			수 립			미 수 립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합 계	105	103	2	67	65	2	38	38	-
2018	34	34	-	13	13	-	21	21	-
2019	35	35	-	23	23	-	12	12	-
2020	36	34	2	31	29	2	5	5	-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별표] “시설물안전법 대상 민간시설 미등록 명세”와 같이 “○○읍 ○○아파트” 등 11건의 공동주택과 “○○읍 ○○○○” 등 연면적 660㎡이상 연립주택 16개 시설을 20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시설물로 지정·고시 또는 해지하지 않고 있으며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현황 정보도 입력하지 않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 피해에 노출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3. 정기·정밀점검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등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되, 정기점검은 안전 A등급은 반기에 1회, 그 외에는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표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명세”와 같이 실시하며, 이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표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명세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따라서 진도군은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등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안전생활지원과)은 [표 3] “정기점검 실시 명세”와 같이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2018년 이후 총 189개 시설물 중 79개 시설물(18~31개/년)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 등 시설물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3] 정기점검 실시 명세

(단위 : 회)

연 도	구 분	정기점검 대상			정기점검 실시			정기점검 미실시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소계	공공	민간
합 계		189	185	4	110	106	4	79	79	-
2018	상반기	14	14	-	11	11	-	3	3	-
	하반기	34	34	-	7	7	-	27	27	-
2019	상반기	34	34	-	15	15	-	19	19	-
	하반기	35	35	-	23	23	-	12	12	-
2020	상반기	36	34	2	24	22	2	12	12	-
	하반기	36	34	2	30	28	2	6	6	-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안전생활지원과)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앞으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 ①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지방행정○급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미등록 시설물(민간시설 포함)에 대하여 조속히 등록하여 관리하고, 기존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설물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요구 및 통보

제 목 ○○ 일반산업단지 인허가·지정취소 등 사업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일자리투자과)

훈 계 대 상 자 진도군 ○○○○○○○과 지방시설○급 ○○○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 7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전라남도로부터 산업단지로 지정(2006년) 받은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실시계획 승인권자(2016. 12월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개정)로서 관리·감독하고 있다.

지방시설○급 ○○○은 2016. 7. 4.부터 2018. 8. 31.까지 ○○○○○○○과에서 ○○ 일반산업단지 인허가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중공업(주)(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은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2006. 11. 3. 전라남도(지역계획과)로부터 민간개발방식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받아 2007. 7. 30.부터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2008. 12. 31.)을 2010. 6. 30.까지 2차례 연장하며 자금조달 및 투자자유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사업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2010. 4월 공사를 최종 중단하였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표]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승인 명세”와 같이 총 4회(9년) 추가로 연장하며 사업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채권단(주)○○○○은행)은 2015. 3. 16. 육지부 토지(88필지, 412,923m²)를 ○○중공업(주)에 매각하였고, 사업시행자가 ○○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2018. 6. 26. ○○지방법원은 법인 청산가치가 계속기업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하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였다.

[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명세

구분	승 인 일 자	개발사업 기간 연장	비고
1차	2008. 7. 8.	2008. 12. 31. → 2009. 6. 30.	
2차	2009. 6. 26.	2009. 6. 30. → 2010. 6. 30.	
3차	2010. 7. 27.	2010. 6. 30. → 2012. 6. 30.	
4차	2012. 7. 19.	2012. 6. 30. → 2014. 6. 30.	
5차	2014. 10. 2.	2014. 6. 30. → 2017. 6. 30.	2015. 3. 16. 채권단 토지매각
6차	개발계획 - 2017. 9. 22. 실시계획 - 2017. 9. 28.	2017. 6. 30. → 2019. 6. 30.	2018. 6. 26. 회생절차 폐지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법인을 청산하지 않고 2019. 7월 진도군을 경유하여 전라남도(지역계획과)에 개발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전라남도(지역계획과)는 사업시행자에게 시행자 요건 미확보에 따른 토지확보 등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확보자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2019. 6. 30.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이 최종 만료되었다.

2. 산업단지 인허가·지정취소 등 행정절차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입지법」 제11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¹⁾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

1)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시설용지의 30%를 직접 사용하는 자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산업입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토지미확보 등) 다른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다른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일자리투자과)은 2015. 3. 16. 사업시행자 부도에 따른 토지소유권이 ○○중공업(주)로 이전되어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상실되었으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또한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전라남도(지역계획과)가 사업시행자의 2017. 9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에 대하여 2017. 9. 22. 개발계획 변경(사업기간 2년 연장)을 승인하면서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진도군(일자리투자과)에 “공유수면 원상이행보증금 예치확인서”를 확인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2017. 9. 28.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2019. 7월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전라남도(지역계획과)가 토지확보 등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확보자료 보완을 요구한 지 1년 8개월이 경과한 20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시행자가 토지확보 등 시행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3. 공유수면 매립권리 실효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 되도록 공유수면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절차간소화법」 제28조에 따르면 「산업입지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경우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 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진도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의제 승인받은 사업으로서 개발계획에서 정한 기간 동안은 공유수면매립 등의 권리가 유지되지만 사업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을 재개하려 할 경우에는 「공유수면법」 등에 따라 별도의 협의·승인을 진행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했다.

한편 「공유수면법」 제54조에 따르면 자기의 귀책사유로 매립면허가 실효된 자는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3조에 실효된 면허를 회복하고자 하려는 자는 실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효력복원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효력복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진도군과 사업시행자는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효력복원기간 내에 효력복원 신청·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효력복원 기간을 실기하였다.

따라서 진도군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지속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공유수면을 당초대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원상회복할 수 없을 경우 「공유수면법」 제54조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이행보증금”으로 행정대집행 등을 실시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일자리투자과)은 2017. 9. 28.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시

“공유수면 원상이행보증금 예치확인서” 제출을 확인하지 않고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원상회복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유수면법」 제54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무가 면제된 자가 설치한 매립지, 시설물 및 인공구조물은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20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일자리투자과)은 2017. 9월 실시계획 승인 이전인 2009. 6월부터 “원상이행보증금 예치확인서”가 이미 만료된 상태였고 2017. 9월에는 사업시행자가 이미 부도 상태로서 보증금 신규 예치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 해 주기를 요청하고, 개발계획승인권자(산업단지 지정)인 전라남도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 ① 개발계획 승인 시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시설○급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산업입지법」에 따라 개발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새로운 투자자 유치 또는 매립된 공유수면을 국유재산으로 등록·관리하는 등의 사업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관광과, 문화예술체육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진도항만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훈 계 대 상 자 진도군 ○○○○과 지방시설○급 ○○○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균형 있고 조화로운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항만, 상하수도, 농업, 안전 등 [표] "5억원 이상 건설공사 추진 명세"와 같이 약 1,521억원을 투입하여 47건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5억원 이상 건설공사 추진 명세

(단위 : 백만원)

계		도 로		항 만		상하수도		농업·안전		관광·체육 등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47	152,177	6	8,153	16	83,909	6	17,043	8	29,374	11	13,698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시설○급 ○○○은 2018. 12. 15.부터 2020. 12. 31.까지 ○○○○과에서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 건설공사 현장 품질시험계획 승인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5]에 따르면 초급 품질관리 대상 건설공사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규모 20㎡ 이상의 시험실과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진도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규모 20㎡ 이상의 시험실과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문화예술체육과 등 5개 부서)은 [별표 1]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명세”와 같이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진도 ○○○○○ 우레탄 및 천연잔디 교체공사” 등 35개 사업장의 품질시험계획에 대해 검토 및 승인하지 않았다.

또한 관광과 등 6개 부서는 [별표 2] “시험실 미설치 및 품질관리인 미배치 명세”와 같이 32개 사업장의 현장에서 시험실(시험, 검사장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 중 11개 사업장은 품질 관리인도 배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20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3.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시험 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

설기술자(품질관리자) 중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 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 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하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 품질관리기술자(최하위)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하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기술자 인건비를 별도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건설교통과)은 [별표 3] “품질관리활동비 과다 계상 명세”와 같이 1개 사업장이 별도의 29,254천원의 품질관리활동비를 반영하고 있는데도 20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감액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등에 따른 건설공사장에 대한 품질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과다 반영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시설○○급 ○○○을 훈계하고(훈계)

②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계획 승인 없이 시행 중인 현장에 대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제출 받아 승인하고, 시험실 면적이 부적합한 현장은 법적 기준에 따라 시험실을 설치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 계상된 품질관리비에 대하여 29,254,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3] 생략

전 라 남 도

징 계·훈 계·주의 요구

제 목 수산물○○○○사업(공장) 보조금 집행 등 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경제마케팅과)

징 계 대 상 자 진도군 ○○○○과 지방시설○급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① 진도군 ○○○○사업소 지방행정○급 ○○○

② 진도군 ○○○○과 지방시설○급 ○○○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18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라 2019. 3. 12. ○○○○ 영어조합법인(대표 ○○○)에 2,400백만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하는 등 수산물○○○○사업을 추진하였다.

2. 보조금 교부 결정 등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2018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에서 시설 부지를 확보한 자의 요건의 하나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장입지기준 확인을 받아 확인서¹⁾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1) 개별 필지를 대상으로 공장설립 가능 여부와 공장설립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확인하여 주는 확인서

또한 같은 지침에서 시장·군수는 수산물○○○○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후 승인서²⁾ 등을 다시 제출받아 재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을 때 공장설립승인서를 제출받아 공장설립 승인을 확인 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경제마케팅과)은 [표 1] “수산물○○○○사업 보조금 집행 명세”와 같이 ○○○○ 영어조합법인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공장설립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건축허가서가 제출되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다.

[표 1] 수산물○○○○사업 보조금 집행 명세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자	위치	보조금				보조금 교부결정일	보조금 정산 지급일
		계	국비	군비	자부담		
○○○○ 영어조합법인	○○면 ○○리 000외 4필지	2,400	720	720	960	2019. 3. 12.	2020. 6. 15.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보조사업자가 공장설립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등록을 못하였는데도 공장 건축물 준공 및 제조시설 설치를 완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2020. 6. 15. 보조금을 정산하였다.

다.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1) ○○○의 경우

○○○은 2018. 10. 1.부터 2020. 2. 28.까지 약 1년 5개월간 ○○○○○과에서 수산물○○○○사업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공장설립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채 보조금

2) 공장설립이 가능한 개별 필지에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승인권자에게 신청하여 받는 승인서

교부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19. 3. 8. ○○○○ 영어조합법인에서 수산물○○○○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교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 확인을 태만히 하여 제2-나와 같이 2019. 3. 12.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신청한 기성금으로 약 727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업무 후임자인 지방시설○급 ○○○이 보조금 준공금으로 약 713백만원을 정산 지급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위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기 전 ○○○○○과 ○○○○팀에 공장설립승인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공장설립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바로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20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대규모 수산물 원료 소비가 가능한 수산식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구축이 목적인 보조사업 시행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게 되었다.

2) ○○○의 경우

○○○은 2018. 9. 1.부터 2020. 6. 30.까지 약 1년 10개월간 ○○○○○과에서 수산물○○○○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공장설립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보조금 교부 결정 등의 업무 담당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이 검토하고 기안한 보조금 교부 결정 공문 및 관련 서류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결재하여 제2-다-1)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공장 건축허가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민원봉사과)은 공장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공장설립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해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민원봉사과)은 [표 2] “공장 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명세”와 같이 〇〇〇〇 영어조합법인에서 〇〇면 〇〇리 000 외 4필지에 신청한 공장 건축물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공장설립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2018. 10. 4. 건축 허가하고 2020. 5. 11. 사용승인 하였다.

[표 2] 공장 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명세

(단위 : m²)

구분	위치	건축주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신축	〇〇면 〇〇리 000 외 4필지	〇〇〇〇 영어조합법인	6,784	1,959	2018. 10. 4.	2020. 5. 11.

※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공장설립 승인 담당부서(경제마케팅과)에 확인한 결과 건축허가 신청 전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하였다면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진도군(민원봉사과)은 위 법인이 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을 때는 공장설립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을 먼저 받도록 안내하여야 했는데도 안내하지 않아 사업자가 20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 공장등록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〇〇〇은 2017. 7. 5.부터 2019. 1. 8.까지 약 1년 6개월간 〇〇〇〇과에서 건축허가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공장 건축물의 경우 공장설립승인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른채 건축허가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2018. 4. 2. ○○○○ 영어조합법인에서 신청한 공장 건축물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공장설립승인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2018. 10. 4. 공장 건축물 건축허가를 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그리고 위 법인이 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을 때 공장설립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을 먼저 받도록 안내하여야 했는데도 안내하지 않아 사업자가 20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 공장등록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담보제공 등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경제마케팅과)은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 취득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중요재산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담보제공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한편 진도군(경제마케팅과)은 보조사업장 42개소를 대상으로 목적 외 사용 여부 확인, 사업장 정상 운영상황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후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2020. 11. 9.부터 2020. 11. 20.까지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였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경제마케팅과)은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점검을 하면서 위 법인이 공장등록을 못하여 제품을 생산 후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점검 결과를 보고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①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진도군은 건축허가서가 제출되어 공장설립 승인에 대한 의제 처리가 당연히 완료되어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식품산업진흥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으며, 「건축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 되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보조금을 정산 지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비 보조사업인 수산물○○○○사업은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대규모 수산물 원료 소비가 가능한 수산식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구축이 목적인 사업으로 시행지침서에 보조금 교부 신청시 공장설립승인서 등을 다시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필수 조건임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공장설립 승인 여부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였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및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도군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공장 건축허가

진도군은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③ 보조사업 사후관리

진도군은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시행하였을 때 공장등록이 안되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조사업자가 별도 보고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제품 생산 및 판매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보조사업자가 공장입지기준 확인서를 발급 받아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인지한 상태로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을 소홀히 한 보조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조사업 사후관리 목적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용도와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보조사업자에게 관련 공부 등을 제출받을 때 공장등록증을 포함하여 제출받았다면 공장등록을 못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관련 업무를 알지 못하여 공장등록증을 제출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진도군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요구 양정

수산물○○○○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방시설○급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 ①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집행을 잘못된 지방시설○급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하고(징계)
- ② 보조금 교부 결정 검토를 잘못된 지방행정○급 ○○○과, 공장설립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한 지방시설○급 ○○○을 훈계하며(훈계)
- ③ 앞으로 보조사업 사후관리 시 보조사업장과 관련된 공부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 라 남 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업무 등 설계 용역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행정과, 지역개발과)

훈 계 대 상 자 ① 진도군 ○○과 지방기록○○○ ○○○

② 진도군 ○○○○과 지방시설○급 ○○○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2020년 공공건축 사업으로 진도군 ○○○ 신축, ○○○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각각 추진하였다.

지방기록○○○ ○○○는 2011. 6. 24.부터 20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 ○ ○과에서 진도군 ○○○ 신축 업무 담당자로, 지방시설○급 ○○○은 2020. 2. 20.부터 2020. 12. 31.까지 ○○○○과에서 ○○○ 리모델링 공사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은 [표 1] “공공건축 조성사업 사전 행정절차”와 같이 설계비 추정 가격 기준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공공건축 조성사업 사전 행정절차

설계비 추정 가격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5천만원 미만	필수	×	선택	선택
5천만원 ~ 1억원 미만	필수	×	필수	선택
1억원 이상	필수	필수	필수	의무 (우선적용)

자료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자료집 발췌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 외의 설계를 발주하더라도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공공건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건축기획 업무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행정과, 지역개발과)은 [표 2] “공공건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계약 명세”와 같이 진도군 ○○○ 신축 및 ○○○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필수 또는 의무적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공공건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계약 명세

(단위 : 천원)

용역명	발주부서	추정 가격 (계약금액)	계약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기획업무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진도군 ○○○ 신축 실시설계 용역	○○과	96,318 (84,317)	2020. 11. 10.	부	대상아님	부	대상아님
○○○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과	132,884 (115,888)	2020. 12. 18.	부	부	부	부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으로 발주하더라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상당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했는데도 그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공건축의 합리적인 조성과 관리로 투입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 ① 공공건축 조성사업 설계용역 발주 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기록○○○ ○○○, 지방시설○급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상하수도사업소)

훈 계 대 상 자 ① 진도군 ○○○○사업소 지방시설○급 ○○○

② 진도군 ○○○○과 지방시설○급 ○○○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법」에 따라 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2015. 3. 30. (주)○○기술공사(대표이사 ○○○)와 “진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금액 187,590천원)하고 2018. 10. 1. 용역을 완료하였고,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2018. 8. 13. ○○○○건설(주)(대표 ○○○)과 “○○면 ○○○ 및 ○○○○로 설치공사”¹⁾을 계약(금액 1,257,063천원)하고 2019. 12. 23. 준공하였다.

또한 진도군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정하

1) 사업량 : 송수관로 1.1km, 배수관로 1.7km, 물탱크 700톤×2조

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진도군은 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해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약 31억원(국비보조율 70%)을 지원받아 2018. 4. 16. (주)○○개발(대표이사 ○○○)과 “○○○지구 마을하수도 하수도정비사업”²⁾을 계약(금액 1,818,893천원)하고 2020. 9. 24. 준공하였다

지방시설○급 ○○○은 2019. 1. 9.부터 2020. 12. 31.까지 ○○○○사업소에서 수도 정비사업 담당자로, 지방시설○급 ○○○은 2018. 9.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업소에서 하수도 정비사업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수도 정비사업 추진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시공방법의 변경,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2) 사업량 : 하수처리장 100㎡/일, 오수관로 5.3km, 배수설비 220세대 등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 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상하수도사업소)은 2021. 3. 31. 감사일 현재 “○○면 및 ○○○ 설치공사”에서 세라믹 방수는 배수지 벽면, 바닥면에만 반영하고 물이 접하지 않은 천장면(467㎡)은 제외하여야 하나, 전 면적(1,347㎡)에 ‘세라믹 방수’를 시공하여 28,990천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또한 미시공한 흙막이 가시설(L=96m, 9,878천원)과 경계석 기초 합판 거푸집(L=107m, 675천원)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10,553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준공 처리하였다.

3.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

관리 실무요령(환경부)」에 따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착공 후 공사계약 변경(설계변경) 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없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하수관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설계 변경하여 국고보조금이 집행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도군(상하수도사업소)은 [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설계변경 추진 명세”와 같이 “○○마을(2반)”은 진도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3. 2.)의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변경내용에 대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2019. 8. 7. 설계 변경(변경금액 304백만원)하여 2021. 3. 31.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가 반영 및 준공 처리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설계변경 추진 명세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 내용	반영 사유	반영일
○○○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오수관로(D200)590m, 압송관로 1,134m, 중계펌프장 1개소, 배수설비 18개소 등	○○마을(2반) 주민 하수처리시설 공사 추가 요청	2019. 8. 7.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마을(2반)” 하수도 정비로 사용된 국고보조금 213백만원(설계변경금액 304백만원에 국비 보조율 70%를 적용)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과 다르게 사용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 ①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수도 및 하수도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지방시설○급 ○○○, 지방시설○급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다 반영된 10,553,000원을 회수 조치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